

내용증명서비스의 전자적 처리에 관한 법제분석

조용혁



법제분석지원 연구 16-21-④

내용증명서비스의 전자적 처리에 관한 법제분석

조 용 혁

내용증명서비스의 전자적 처리에 관한 법제분석

A Legal Analysis on the
Contents-Certified Mail Service

연구자 : 조용혁(부연구위원)
Jo, Yong-Hyuk

2016. 11. 30.

요 약 문

I. 배경 및 목적

□ 연구의 배경

- 연간 수백만 건의 내용증명우편이 발송되고 있는데, 그 대부분은 우체국창구를 통해 실물서면(종이문서)을 직접 접수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 내용증명 접수가 우체국창구에 집중되다보니, 원본·등본 간 동일성 확인 등 내용증명 처리업무가 과중한 것이 현실임
- 이뿐만 아니라 우체국창구를 통해 접수된 내용증명의 경우에는 내용증명 이용자가 재증명 또는 열람을 원하는 경우 발송우체국을 방문하여야 한다는 한계가 있음
- 이를 보완하는 장치로서 전자내용증명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지만, 여러 가지 제약요건으로 인하여 우체국창구 접수를 대체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 내용증명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허용될 것인지 여부와 전자적 처리를 위한 법률상 요건 등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 연구의 목적

- 내용증명서비스의 전자화를 통해서 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고객만족도를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

- 내용증명 이용자의 편익을 증대함과 동시에 국민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균형적 제도 발전방안을 제시

II. 주요 내용

□ 내용증명서비스의 개관

- 내용증명서비스의 의의
- 내용증명서비스 이용 및 처리 현황
- 내용증명의 법적 지위

□ 서면의 전자화에 관한 입법체계

- 서면의 전자화 동향
- 공공분야와 민간분야
- 전자문서와 전자화문서

□ 내용증명서면의 전자화를 위한 법제 개선방안

- 내용증명서비스 전자화의 수요
- 내용증명서면의 전자화 관련 유사제도
- 내용증명서면의 전자화의 요건과 효과
- 내용증명서비스의 전자적 처리를 위한 법제화 방안

Ⅲ. 기대효과

- 내용증명에 관한 법리적·정책적 분석을 통하여 관련 법제의 발전방안을 제시함으로써 내용증명접수의 정책방향 및 우편법령의 발전에 기여
- 선택적 우편역무 관련 규율체계의 개선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내용증명서비스의 전자화에 관한 제도적 환경조성을 위한 정책에 반영
- 우편관서의 창구업무 간소화 및 고객 편의 제고를 위한 정책에 반영

▶ 주제어 : 내용증명, 전자내용증명, 전자문서, 전자화문서, 공인전자주소, e-그린우편

Abstract

I . Background and Purpose

Background of this study

- Many millions of Contents-Certified Mail are delivered every year and almost of them are received in a form of paper document at post office window.
- According to concentration of Contents-Certified Mail, a post office have to carry a heavy workload.
- A possibility and legal conditions for electronic processing of contents-certified mail service need to be clarified.

Purpose of this study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view legal issues concerned with Contents-Certified Mail and to finally suggest policy and legislative system for Contents-Certified Mail.

II . Main Contents


Current state of Contents-Certified Mail

- Use and process of Contents-Certified Mail service
- Legal Status of Contents-Certified Mail service

- Legislation System for Digitization of document
 - Trend of Document-digitization
 - Public sector and private sector
 - Electronic document and digitized document
- Suggestion for improving legislative system concerned with issue and circulation of Contents-Certified Mail
 - Demand for electronic processing of contents-certified mail service
 - Similar legislation relevant to contents-certified mail service
 - Legal conditions for electronic processing of contents-certified mail and it's legal effects
 - Legislation way for electronic processing of contents-certified mail

III. Expected Effect

- This study suggests the way to improving policy and legislative system for Contents-Certified Mail Service
- This research is intended to provide the legal framework for Contents-Certified Mail Service, and is expected to contribute to better environment for Postal Services

 **Key Words** : Contents-Certified Mail, Electronic Contents-Certified Mail Service, Digitized Document, Electronic Document, Certified Electronic Address, E-Green Mail

목 차

요 약 문	3
Abstract	7
제 1 장 서 론	13
1. 연구의 목적	13
2. 연구의 내용	14
제 2 장 내용증명서비스의 개관	17
1. 내용증명서비스의 의의	17
(1) 우편서비스의 종류	17
(2) 우편서비스의 특성	19
(3) 내용증명의 개념	21
(4) 내용증명의 외국사례	22
(5) 내용증명의 특성	24
2. 내용증명서비스 이용 및 처리 현황	25
(1) 내용증명서비스의 처리	25
(2) 내용증명 이용 현황	29
3. 내용증명의 법적 지위	31
(1) 내용증명의 법적 성질	31
(2) 내용증명의 법적 효과	33
(3) 법률요건으로서 내용증명	35

제 3 장 서면의 전자화에 관한 입법체계	41
1. 서면의 전자화 동향	41
2. 공공분야와 민간분야	42
(1) 공공분야	42
(2) 민간분야	46
3. 전자문서와 전자화문서	48
(1) 전자문서	48
(2) 전자화문서	50
제 4 장 내용증명서면의 전자화를 위한 법제 개선방안	55
1. 내용증명서비스 전자화의 수요	55
(1) 내용증명서비스 전자화의 내용	55
(2) 내용증명서비스 전자화의 기대효과	56
2. 내용증명서면의 전자화 관련 유사제도	57
(1) 전자내용증명(e내용증명 또는 e-그린우편)	57
(2) 공인전자주소제도	62
(3) 전자내용증명 및 샵(#)메일은 “내용증명서비스 전자화”를 대신할 수 있는가?	66
3. 내용증명서면의 전자화의 요건과 효과	68
(1) 내용증명의 유형성(有形性) 요건	68
(2) 내용증명 대상문서의 전자적 보관	69
(3) 내용문서의 전자적 발송	70
4. 내용증명서비스의 전자적 처리를 위한 법제화 방안	72

(1) 전자문서법제의 개선	72
(2) 우편법제의 개선	74
제 5 장 결 론	77
참 고 문 헌	81
[붙임] 전자문서로 할 수 있는 사인(私人)의 문서행위	85

제 1 장 서 론

1. 연구의 목적

내용증명은 누가(발송인) 누구에게(수취인) 어떤 내용의 문서(내용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공행정기관(우체국)이 증명하는 서비스로서, 시효중단 등의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의사표시 또는 의사통지를 함에 있어서 증거로 삼을 목적 또는 심리적 압박수단 등으로 사용되는 것이 상당수라고 할 것이다.

연간 수백만 건의 내용증명이 행하여지고 있고 점차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들 중 대부분은 우체국창구를 통해 실물 서면(종이문서)을 직접 접수하는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점증하고 있는 내용증명 접수의 대다수가 우체국창구에 집중되다보니, 원본·등본 간 동일성 확인과 계인·간인·라벨링 등의 내용증명 처리업무가 과중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 뿐만 아니라 우체국창구를 통해 접수된 내용증명의 경우에는 내용증명 이용자가 재증명 또는 열람을 원하는 경우 발송우체국을 방문하여야 한다는 한계가 있다. 이를 보완하는 장치로서 전자내용증명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지만, 여러 가지 제약요건으로 인하여 우체국창구 접수를 대체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에 우정사업본부는 내용증명서비스의 전자화를 통해서 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고객만족도를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내용증명서비스의 전자적 처리는 다양한 형태를 구상할 수 있지만, 단기적으로는 우체국 창구를 통하여 접수되는 내용증명 서면의 전자화를 목표로 한다. 내용증명우편물을 발송하고자 하는 자가 내용문서 원본 및 그 등본 2통을 제출하는 대신에 원본 1부만을 제출하도록 하고, 해당 내용문서를 전자화문서로 변환함으로써 간인·계인·

라벨링 등의 창구업무를 간소화하고, 발송우체국에 한정되는 열람을 전국 어디에서나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이다.

이러한 내용증명서비스 전자화의 타당성과 그 요건 및 효과 등을 검증하고, 내용증명 이용자의 편익을 증대함과 동시에 국민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균형적 제도 발전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2. 연구의 내용

먼저 제2장에서는 본 법제분석의 대상인 내용증명서비스의 의의와 업무처리 및 이용 현황, 법적 지위 등을 살펴봄으로써 연구대상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한다. 1960년 「우편규칙」(대통령령)부터 시작해서, 1975년 제정된 「우편법 시행규칙」으로 이어져서 오늘에 이르고 있는 내용증명서비스의 의의와 이용 및 처리 현황을 살펴보고, 내용증명의 법적 효과 그리고 법률요건으로서 내용증명을 규정하고 있는 제도 등 내용증명의 법적 지위를 알아보기로 한다. 이는 내용증명서비스의 전자적 처리에 관한 법제개선방안을 모색함에 있어서 그 필요성 내지 가능성 그리고 요건과 한계를 식별함에 있어서 전제가 되는 주요 판단근거로 기능한다.

그리고 내용증명서비스의 전자화를 위한 법제개선방안을 구상함에 있어서 고려 내지 참조할 필요가 있는 현행 입법체계를 조사·분석하기로 한다. 즉, 제3장에서는 서면의 전자화동향을 살펴보고, 각각 공공분야와 민간분야의 전자화된 서면에 관한 개념과 처리, 법적 효력에 관한 입법동향을 분석함으로써 서면의 전자화에 관한 현행 입법체계를 파악하기로 한다. 또한, 서면의 전자적 처리에 있어 핵심적 개념이 되는 전자문서와 전자화문서의 효력에 관한 입법례를 비교·분석한다. 이를 통해 내용증명서비스의 전자화에 필요한 법령개정안의 구체적 타당성과 체계정합성을 확보하고자 한다.

이에 이어서 제4장에서는 내용증명서면의 전자화를 위한 관련법제의 합리적 개선방안을 도출하여 제안하기로 한다. 제도개선검토의 대상이 될 내용증명서비스 전자화의 내용과 기대효과를 살펴보고, 전자 내용증명 및 샵(#)메일(공인전자주소) 등 내용증명서면의 전자화와 관련된 유사제도를 살펴보고 내용증명서비스의 전자적 처리와 비교·분석함으로써 내용증명서면의 전자화의 수요와 타당성을 검증한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내용증명서면의 전자화의 요건 및 효과를 분석한 후, 내용증명서비스의 전자화를 위한 법제화방안을 제시하기로 한다.

제 2 장 내용증명서비스의 개관

1. 내용증명서비스의 의의

(1) 우편서비스의 종류

우편물은 서신(書信) 등 의사전달물, 통화(송금통지서 포함) 및 소형 포장우편물을 말하는 “통상우편물”과 통상우편물 외의 물건을 포장한 우편물인 “소포우편물”로 구분된다(「우편법」 제2조). 가장 대표적인 우편물인 서신은 “의사전달을 위하여 특정인이나 특정 주소로 송부하는 것으로서 문자·기호·부호 또는 그림 등으로 표시한 유형의 문서 또는 전단”을 말한다.¹⁾

그리고 「우편법」은 우편역무를 보편적 우편역무와 선택적 우편역무로 구분하고 있는데, 보편적 우편역무란 “전국에 걸쳐 효율적인 우편송달에 관한 체계적인 조직을 갖추어 모든 국민이 공평하게 적정한 요금으로 우편물을 보내고 받을 수 있는 기본적인 우편역무”를 말하며(「우편법」 제14조 제1항), 선택적 우편역무란 “보편적 우편역무 외의 우편역무”를 말한다(「우편법」 제15조 제1항). 보편적 우편역무의 대상은 ① 2킬로그램 이하의 통상우편물과 ② 20킬로그램 이하의 소포우편물, ③ ‘2킬로그램 이하의 통상우편물 또는 20킬로그램 이하의 소포우편물’의 기록 취급 등 특수취급우편물 등이고, 선택적 우편역무의 대상은 ① 2킬로

1) 다만, ① 신문과 ② 정기간행물, ③ 서적(표지를 제외한 48쪽 이상인 책자의 형태로 인쇄·제본되어 있고, 쪽수가 표시되어 있으며, 발행인·출판사나 인쇄소의 명칭 중 어느 하나가 표시되어 발행되었어야 한다), ④ 상품안내서(상품의 가격·기능·특성 등을 문자·사진·그림으로 인쇄한 16쪽 이상(표지 포함)인 책자 형태), ⑤ 화물에 첨부하는 봉하지 아니한 첨부서류 또는 송장, ⑥ 외국과 수발하는 국제서류, ⑦ 국내에서 회사(공공기관 포함)의 본점과 지점 간 또는 지점 상호 간에 수발하는 우편물로서 발송 후 12시간 이내에 배달이 요구되는 상업용 서류, ⑧ 신용카드는 제외한다(「우편법」 제1조의2 제7호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그램을 초과하는 통상우편물과 ② 20킬로그램을 초과하는 소포우편물, ③ ‘2킬로그램을 초과하는 통상우편물 또는 20킬로그램을 초과하는 소포우편물’의 기록취급 등 특수취급우편물, ④ 우편과 다른 기술 또는 역무가 결합된 역무, ⑤ 우편시설, 우표, 우편엽서, 우편요금 표시 인영이 인쇄된 봉투 또는 우편차량장비 등을 이용하는 역무, ⑥ 우편이용과 관련된 용품의 제조 및 판매, ⑦ 그 밖에 우편역무에 부가하거나 부수하여 제공하는 역무 등이다(「우편법」 제14조 제2항 및 제15조 제2항). 만국우편연합(UPU : Universal Postal Union)에서는 기본적인 우편서비스를 향유할 권리를 인류의 기본권을 구성하는 것 가운데 하나로 규정하고 있고,²⁾ EU는 「Directive 97/67/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5 December 1997 on common rules for the development of the internal market of Community postal services and the improvement of quality of service」를 통해 보편적 우편서비스를 규정하고 있다.³⁾ 모든 사람이 우편을 당연히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국내에서 모든 주민이 감당할만한 요금 수준(at an affordable price)에서 합리적으로 접근(reasonable access)할 수 있는 일정 수준의 우편서비스’가 보편적으로 제공되어야 한다.⁴⁾

한편, 우편서비스를 크게 기본우편서비스와 부가우편서비스로 나누고, 그 중 부가우편서비스의 제공은 기본우편서비스의 제공을 전제로 부가가치를 제공함으로써 그 제공에 대한 대가(수수료 등)를 우편이용자로부터 수취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설명하는 견해도 있다.⁵⁾

2) UPU, Guide to Postal Reform and Development -Module II Universal postal Service-, 2004, pp.8~10.(최중범, “보편적 우편서비스에 관한 소고”, 「우정정보」,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06, 4쪽에서 재인용)

3) <http://eur-lex.europa.eu/legal-content/EN/TXT/HTML/?uri=CELEX:31997L0067&from=EN> (2016년 8월 7일 방문)

4) 최중범, “보편적 우편서비스에 관한 소고”, 「우정정보」,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06, 4쪽.

5) 문성철, “해외 주요국의 일반통상우편우편 부가서비스 제공 현황”, 「우정정보」, 우정경영연구소, 2009, 77쪽.

(2) 우편서비스의 특성

「우편법」은 기본적인 우편역무의 제공주체를 국가로 한정하고, 국가가 아닌 자의 서신송달업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즉, 우편사업은 기본적으로 국가가 경영하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관장한다(「우편법」 제2조 제1항).⁶⁾ 그리고 원칙적으로 국가 이외의 자는 타인을 위한 서신의 송달 행위를 업(業)으로 할 수 없으며, 자기의 조직이나 계통을 이용하여 타인의 서신을 전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우편법」 제2조 제2항). 다만, 따로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우편사업의 일부를 개인, 법인 또는 단체 등으로 하여금 경영하게 할 수 있으며(「우편법」 제2조 제1항 단서), 우편사업이나 우편창구업무의 위탁을 할 수 있다(「우편법」 제2조 제5항).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17조에서 우정사업의 위탁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고,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이 우편물의 접수 등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하여 규율하고 있다.

역사적으로 우편사업은 통신내용의 사전검열, 국가재정의 확보, 변방지역에 대한 통신수단의 제공 등의 목적으로 국가가 독점적으로 운영해 왔다고 한다.⁷⁾ 국가만이 제공할 수 있는 신서의 송달권을 신서전장권이라 하고, 신서전장권이 국가에 부여된 영역을 우편사업자의 ‘유보영역’이라고 한다.⁸⁾ ‘유보영역(Reserved Service Area)을 설정하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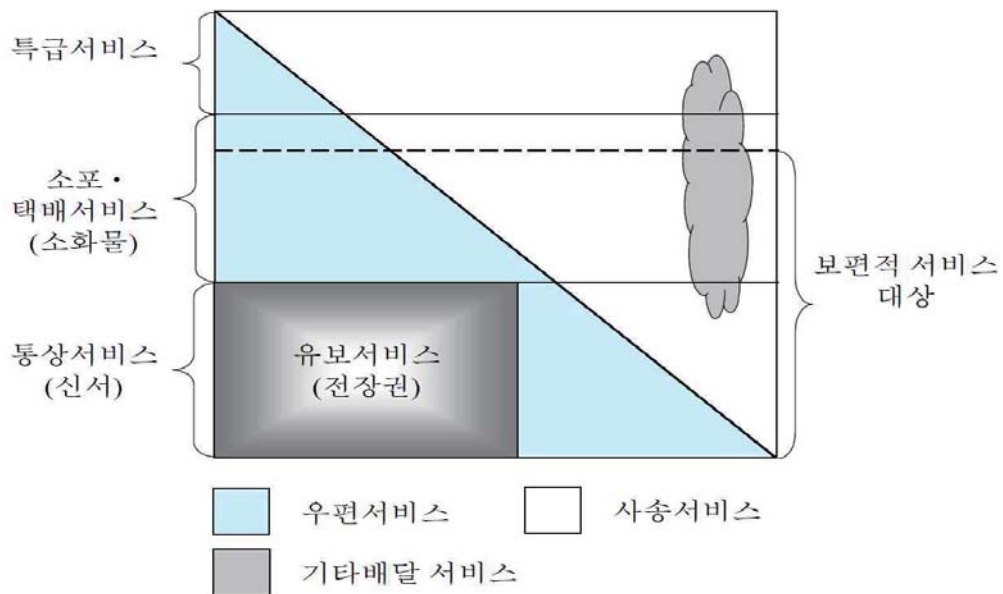
6) 그러나 보편적 우편역무의 제공과 선택적 우편역무의 제공 등 우편업무의 대부분은 「우편법」 제12조의3과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2에 따라 우정사업본부장에게 위임되어 있다. 우정사업본부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소속으로 두는 조직임에도 불구하고(「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및 「우정사업본부 직제」 제1조 참조), 「미래창조과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에서 규정하지 않고 별도로 「우정사업본부 직제」를 통하여 조직의 구성과 직무범위 등을 규정하고 있다.

7) 신도철, “체신공사의 우편사업 독점범위에 대한 정책적 연구”, 「우정정보」, 통신개발연구원, 1995, 73쪽.

8) 신영수, “우편산업의 시장화를 위한 규범적 전제와 과제”, 「법제연구」 제32호, 한국법제연구원, 2007, 176쪽.

방식’은 ‘정부가 재정을 보조하는 방식’(Government Funding) 및 ‘보편적 우편서비스 유지 기금을 설치하는 방식’(Industry Funding)과 함께 보편적 우편서비스 유지비용 충당 방안의 하나로서 국가가 보편적 우편서비스 제공자에게 우편시장의 일정 부분에 대해 독점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권한을 보장하는 것을 의미한다.⁹⁾

<그림 1> 보편적 우편서비스와 유보 서비스¹⁰⁾



우편사업은 별다른 통신수단을 갖고 있지 못한 일반 대중에게 기본적인 통신수단을 보편적으로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국가독점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우편사업을 독점하고 있는 사업자가 서비스를 보편적으로 제공하는 것은 의무이며, 이러한 의무이행은 우편사업자 입장에서는 부담이고, 이러한 부담에 대한 보상으로 사업의 독점이 불가피하다는 논리에 의해 뒷받침되고 있다.¹¹⁾

9) 최종범, 앞의 글, 13~14쪽.

10) 최종범, 앞의 글, 15쪽.

11) 최종범, “우편사업자의 보편적 서비스 제공 의무”, 『우정정보』,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01, 2쪽.

이러한 역사적·이념적 배경 하에 우리 우편법제는 우편서비스를 원칙적으로 국가가 독점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고, 모든 국민이 일정한 우편서비스를 공평·적정한 요금으로 향유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고, 그 외의 우편서비스를 재량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선택적 우편역무로 규정하고 있다.

(3) 내용증명의 개념

내용증명은 등기취급을 전제로 우체국창구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이 증명하는 특수취급제도이다(「우편법 시행규칙」 제25조 제1항 제4호 가목).

첫째, 내용증명의 증명주체는 지방우정청 소속관서인 우체국이 된다. 접수우체국에서 내용문서 원본과 등본을 대조하여 서로 부합함을 확인한 후 내용문서 원본과 등본의 각통에 발송연월일 및 그 우편물을 내용증명우편물로 발송한다는 뜻과 우체국명을 기재하고 우편날짜 도장을 찍음으로서 내용문서의 발송사실을 증명하게 된다(「우편법 시행규칙」 제52조 제1항). 또한, 내용증명우편물의 발송인 또는 수취인은 내용증명우편물을 발송한 다음 날부터 3년까지는 발송우체국에 대하여 특수우편물수령증·주민등록증등의 관계자료를 내보여 동 우편물의 발송인 또는 수취인임을 입증하고 내용증명의 재증명을 청구할 수 있다(「우편법 시행규칙」 제54조 제1항).

둘째, 내용증명의 증명 대상은 내용문서의 발송사실이다. 누가(발송인) 누구(수취인)에게 문서를 발송한 사실과 해당 문서에 어떠한 내용이 담겼다는 사실을 증명할 뿐, 해당 문서에 담긴 내용의 진정성을 증명하지는 않는다. 즉, 내용증명은 우편발송 시에 기재한 내용과 우편발송이 이루어진 일자만을 증명할 뿐이고, 해당 우편물의 내용과 그 도달에 따른 법률효과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셋째, 내용증명을 통하여 발송사실이 증명되는 객체는 문서(文書)이다. 문서를 객체로 하므로, 통화 또는 포장우편물 등은 그 취급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우편법 시행규칙」 제25조 제1항 제12호가 전자우편물을 규정하고 있으나, 전자적 형태로 접수된 통신문 등을 출력·봉합하여 수취인에게 배달하는 역무이므로, 송부되는 대상물은 유형의 문서로 제한된다.

넷째, 내용증명은 우편물의 취급과정을 기록에 의하여 명확히 하는 우편물의 특수취급제도인 등기취급¹²⁾을 전제로 한다.

다섯째, 내용증명은 국내우편물에 한한다.

(4) 내용증명의 외국사례

내용증명서비스는 우리나라 외에는 일본에만 존재한다. 일본의 내용증명도 일반등기우편물의 내용문서¹³⁾에 대하여 증명하는 우편역무로서,¹⁴⁾ 언제 어떤 내용의 문서를 누가 누구에게 발송한 것이라는 것을 발신인이 작성한 등본에 의하여 증명하는 제도이다. 이때 증명하는 것은 내용문서의 존재일 뿐 문서의 내용이 진실한지를 증명하지는 않는다.

다만, 「우편법 시행규칙」에서 구체적 내용을 다루고 있는 우리 우편법제와 달리, 일본의 경우 「郵便法」 제44조 및 제48조 그리고 우편인증사(郵便認証司)의 직무를 규정하고 있는 제58조 등에서 법적 근거를 찾을 수 있다. 일본 우편법제는 법률에서 내용증명 등의 특수취급을 규정하고 있다. 「郵便法」 제44조 제1항이 등기, 인수시각증명, 배달증명, 내용증명 및 특별송달 우편물의 특수취급의 근거를 규정하고,¹⁵⁾

12) 「우편법 시행규칙」 제12조의2 제1항 제1호.

13) 수취인에게 송달하는 문서를 말한다.

14) 내용증명이 등기취급을 전제로 한다는 점은 한국과 동일하다[日本「郵便法」第四十四条(特殊取扱) ○3 引受時刻証明、配達証明、内容証明及び特別送達の取扱いは、書留とする郵便物につき、これをするものとする。].

15) 第四十四条(特殊取扱) 会社は、この節に定めるところによるほか、郵便約款の定め

제48조에서 내용증명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내용증명의 취급은 해당 우편물의 내용인 문서의 내용을 증명하고(「郵便法」 제48조 제1항), 이러한 취급은 우편인증사(郵便認証司)¹⁶⁾에 의해 내용증명 취급에 관한 인증을 받는 것으로 한다(같은 조 제2항).¹⁷⁾ 우편인증사(郵便認証司)는 “내용증명의 취급에 관한 인증”과 “특별송달의 취급에 관한 인증”을 그 직무로 한다. 내용증명의 취급에 관한 인증은 ‘해당 취급을 하는 우편물의 내용인 문서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가 적절하게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하고 해당 우편물의 내용인 문서에 해당 우편물이 발신된 년월일을 기재하는 것’을 말하며, 특별송달의 취급에 관한 인증은 ‘해당 취급을 하는 우편물이 민사소송법 제103조부터 제106조까지 제시된 방법에 따라 적절하게 송달되었다는 것 및 그 송달에 관한 사항이 동법 제109조의 서면에 적절하게 기재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 그 취지를 해당 서면에 기재하여 이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는 것’을 말한다.¹⁸⁾

るところにより、書留、引受時刻証明、配達証明、内容証明及び特別送達の郵便物の特殊取扱を実施する。

16) 우편인증사(郵便認証司)는 내용증명, 특별송달로 하는 등기우편물의 인증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국가자격을 말한다.

17) 第四十八条(内容証明) ① 内容証明の取扱いにおいては、会社において、当該郵便物の内容である文書の内容を証明する。

② 前項の取扱いにおいては、郵便認証司による第五十八条第一号の認証を受けるものとする。

18) 第五十八条(職務) 郵便認証司は、次に掲げる事務（以下この章において「認証事務」という。）を行うことを職務とする。

一 内容証明の取扱いに係る認証（総務省令で定めるところにより、当該取扱いをする郵便物の内容である文書の内容を証明するために必要な手続が適正に行われたことを確認し、当該郵便物の内容である文書に当該郵便物が差し出された年月日を記載することをいう。）をすること。

二 特別送達の取扱いに係る認証（総務省令で定めるところにより、当該取扱いをする郵便物が民事訴訟法第三百条 から第百六条 までに掲げる方法により適正に送達されたこと及びその送達に関する事項が同法第百九条 の書面に適正に記載されていることを確認し、その旨を当該書面に記載し、これに署名し、又は記名押印することをいう。）をすること

<그림 2> 일본 내용증명서비스 개요¹⁹⁾

内容証明郵便のメリットは？

内容証明郵便は、手紙の内容、日付、受取人、差出人を郵便局が証明してくれます。通常はこれに加えて、いつ相手に届いたかを証明してもらうために配達証明書もつけます。



内容証明郵便で、相手に対する意思表示を残しておけば、いざ裁判になった時、言った言わないの水掛け論を避けることができ、場合によっては有力な証拠能力を有する場合があります。また、内容証明郵便を出すことで、自分の「本気さ」を示せば、紛争が解決の方向に動くことも考えられます。

(5) 내용증명의 특성

내용증명우편물은 소포우편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통상우편물의 일종에 해당한다는 점은 명확하지만, 보편적 우편역무와 선택적 우편역무의 구분에 있어서는 추가적인 이해가 필요하다. 내용증명에 관한 명시적 규정은 「우편법 시행규칙」 제25조에서 찾을 수 있다. 같은 조 제1항 제4호는 증명취급²⁰⁾의 일종으로 내용증명을 “등기취급을 전제로 우체국창구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이 증명하는 특수취급제도”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우편법 시행규칙」 제12조의2 제2항에 따른 별표 1은 내용증명을 “보편적 우편역무의 특수취급의 종류”의

19) <http://www.mutou-hiratsuka.com/sdshm.html>(2016년 7월 17일 방문)

20) 증명취급에는 내용증명 외에 배달증명(등기취급을 전제로 우편물의 배달일자 및 수취인을 배달우체국에서 증명하여 발송인에게 통지하는 특수취급제도)이 포함되며, 종전에는 증명취급의 일종으로 “접수시각증명(등기취급을 전제로 발송인이 접수시킨 우편물의 접수시각을 접수우체국이 증명하는 특수취급제도)”이 있었으나, 2014년 개정을 통해 삭제되었다.

하나로 분류하고 있고, 「우편법 시행규칙」 제12조의2 제3항에 따른 별표 2는 내용증명을 “보편적 우편역무에 부가할 수 있는 우편역무”의 일종으로 분류하고 있다. 보편적 우편역무의 대상인 “2킬로그램 이하의 통상우편물”의 특수취급우편물도 보편적 우편역무의 대상이고, 내용증명은 “보편적 우편역무의 특수취급의 종류”에 해당하므로 내용증명서비스도 보편적 우편역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우편법」 제14조 제2항 제3호, 「우편법 시행규칙」 제12조의2 제2항 및 별표 1). 관련 규정을 종합하여 해석하면 내용증명서비스는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선택적 우편역무이지만, 보편적 우편역무의 대상인 통상우편물²¹⁾을 위하여 제공되는 때에는 ‘국민이 공평하게 적정한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게 제공되는 기본적 서비스 유형으로 이해하여야 할 것이다.

즉, 내용증명은 부가가치의 제공을 통하여 금전적 이익을 꾀하고자 하는 부가서비스로 볼 수도 있고, 법률의 형식이 아닌 부령(部令)에 근거한 제한적인 특수제도로 볼 수도 있으나, 국민 누구나 적정한 요금을 부담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기본적 서비스로 보아야 할 것이다.

2. 내용증명서비스 이용 및 처리 현황

(1) 내용증명서비스의 처리

1) 내용문서의 제출

내용증명우편물을 발송하고자 하는 자는 내용문서 원본 및 그 등본 2통을 제출하여야 하고, 동문내용증명(同文內容證明) 우편물인 경우에는 각 수취인별·내용문서 원본과 수취인 전부의 성명 및 주소를 기재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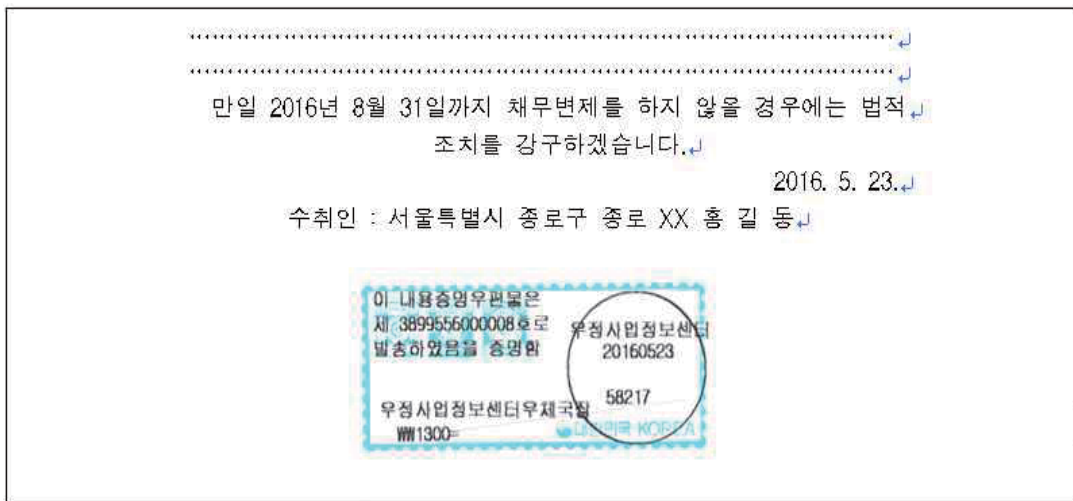
21) 소포우편물은 해당하지 않는다(「우편법 시행규칙」 제12조의2 제2항 및 별표 1).

등본 2통을 제출하여야 한다(「우편법 시행규칙」 제48조 제1항·제2항).
2인 이상의 수취인에게 발송하는 내용증명우편물의 경우 그 내용문서가
동일하면 동문내용증명으로 할 수 있다(「우편법 시행규칙」 제47조).

2) 내용문서의 접수 및 처리

접수우체국은 내용증명우편물을 접수하면 내용문서의 원본과 등본을
대조함으로써 내용의 일치여부를 확인하고, ‘내용증명라벨’ 등을 원본과
등본의 빈곳 또는 뒷면에 첨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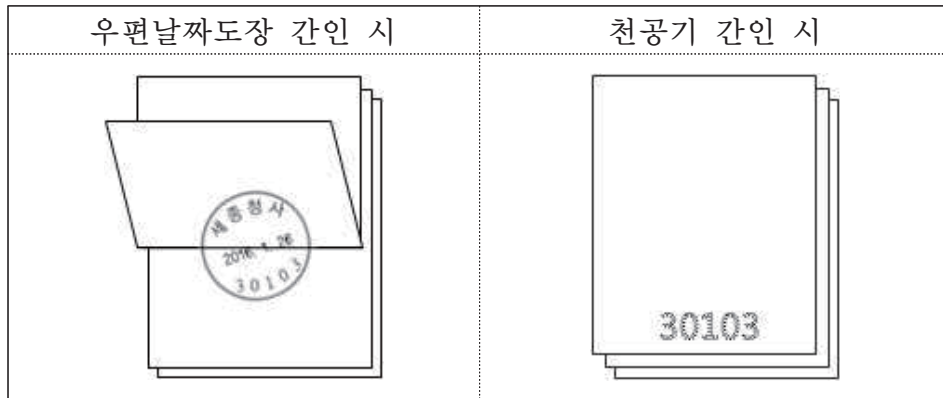
<그림 3> 내용증명 표시 증지 라벨 부착²²⁾



우체국은 내용문서가 2장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함께 묶은
곳에 우편날짜도장으로 간인하거나, 내용문서의 원본 및 등본의 글자
를 훼손하지 않도록 빈 곳에 천공기로 간인(間印)하여야 한다(「우편법
시행규칙」 제52조 제3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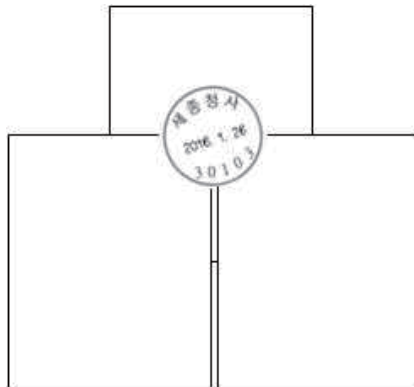
22) 우정사업본부, 「우편편람」 제3편 제2장 제3절 증명취급, 2016, 6쪽.

<그림 4> 내용문서의 간인²³⁾



그리고 수취인에게 발송할 내용문서의 원본, 우체국에서 보관할 등본과 발송인에게 교부할 등본에는 우편날짜도장으로 이어지게 계인(契印)하여야 한다(「우편법 시행규칙」 제52조 제2항).

<그림 5> 일반내용증명의 계인²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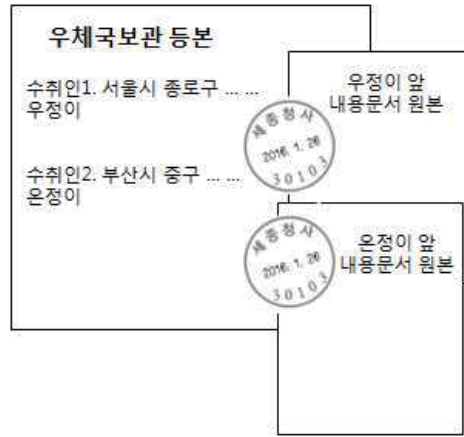


다만, 동문내용증명(同文內容證明)인 때에는 우체국에서 보관하는 등본에 기록된 수취인의 주소·성명 아래쪽에 걸치도록 우편날짜도장으로 각각 계인(契印)한다.

23) 우정사업본부, 앞의 자료, 8쪽.

24) 우정사업본부, 앞의 자료, 8쪽.

<그림 6> 동문내용증명의 계인²⁵⁾



배달증명우편물을 배달한 때에는 발송인에게 배달증명서를 우편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송부한다(「우편법 시행규칙」 제58조).

3) 내용문서의 증명

내용증명우편물 발송자는 내용문서 원본과 등본 2통을 함께 제출하게 되는데, 이 중 원본을 수취인에게 발송하고 우체국과 발송인이 각각 등본을 보관하게 된다.²⁶⁾ 이때 접수우체국은 원본(수취인에게 발송한 내용문서)과 등본을 대조하여 그 내용이 일치하는지를 확인하고 ‘내용증명우편물로 발송한다는 뜻’과 계인, 간인 등을 통하여 내용문서를 증명하게 된다.

그리고 내용증명우편물의 발송인 또는 수취인은 발송한 다음 날부터 3년까지는 내용증명의 재증명을 청구할 수 있다. 즉, 내용증명우편물의 발송인 또는 수취인은 발송우체국에 대하여 본인이 발송인 또

25) 우정사업본부, 앞의 자료, 9쪽.

26) 발송인이 내용문서의 등본의 교부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우체국에 보관하는 내용문서의 등본의 여백에 그 내용을 기재한다(「우편업무 취급 세칙」(우정사업본부훈령) 제150조 제2항).

는 수취인임을 입증하고,²⁷⁾ 보관중인 최초의 내용문서 등본과 같은 등본을 발송우체국에 제출하여 재증명을 청구할 수 있다(「우편법 시행규칙」 제54조 제1항 및 제2항). 재증명 청구를 받은 우체국은 새로 작성한 내용문서의 등본을 제출받아서 우체국에 보관하고 있는 등본과 대조확인하고, ‘내용증명우편물로 발송한다는 뜻’과 계인, 간인 등을 통하여 이를 증명하여 청구인에게 내어준다(「우편업무 취급 세칙」 제153조 제1항). 또한, 내용증명우편물의 발송인 또는 수취인은 우편물의 발송인 또는 수취인임을 입증하고 내용문서 등본의 열람을 청구할 수 있다(「우편법 시행규칙」 제54조 제1항 및 제2항).

(2) 내용증명 이용 현황

내용증명은 매년 7~8백만 통을 상회하고, 연간매출은 150억원을 넘고 있고,²⁸⁾ 접수추이는 증가하는 양태를 보이고 있다.

<그림 7> 내용증명 접수추이²⁹⁾



27) 본인이 발송인 또는 수취인인지 여부는 특수우편물수령증·주민등록증등의 관계 자료를 내보여 증명한다.

28) 내용증명 매출은 2013년은 11,885백만원, 2014년은 16,538백만원, 2015년은 15,464백만원에 이른다(우정사업본부 내부업무자료 참조).

29) 우정사업본부 통계정보 중 “특수취급우편물 연도별 이용량” 자료를 그림으로 재구성하였다. 동 자료는 <http://www.koreapost.go.kr/newBoard/view.action?command=view&idx=7983128&boardId=911&contId=030701000000&searchType=&searchText=&page=2> 참조(2016년 7월 17일 방문).

내용증명은 창구접수는 물론 우체국창구와 epost를 이용한 전자우편에 의한 접수도 가능하지만, <표 1>을 보면 2015년 내용증명 접수채널별 실적은 창구접수가 물량기준으로 82%, 수수료 기준으로 85%를 넘는다. 내용증명서비스의 업무경감 등을 위하여 인터넷우체국(epost)을 이용한 전자우편에 의한 접수를 유도하고 있지만, 여전히 창구접수가 선호되고 있는 것이다.

<표 1> 내용증명 접수채널별 실적³⁰⁾

종 별		실 적		점유비 (%)	비 고
		물 량 (천통)	수수료 (백만원)		
창구접수		7,138	13,206	82.0	창구 → 배달
전자우편	우체국 창구	1,527	2,049	17.5	창구 → 포스트넷 → 포스트피아
	epost	44	209	0.5	인터넷우체국 → 포스트피아
계		8,709	15,464	100.0	

창구접수 내용증명은 접수매수 기준으로 볼 때 1매인 경우가 71.7%로 절대다수를 차지하지만 50매를 초과하는 경우도 있으며, 접수통수 기준으로는 접수통수가 3통 이하인 비율이 제일 높지만, 50통을 초과하는 경우도 28.5%에 이르고, 내용증명접수 상위 우체국의 일평균 이용현황을 살펴보면 과반에 가까운 경우는 10통 이하이지만 일평균물량이 200통을 넘는 우체국도 다수 존재한다.³¹⁾

한편, 창구접수 내용증명은 접수우체국이 원본대조 및 간인, 계인 등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고, 발송우체국에서만 재증명(再證明) 등이

30) 우정사업본부 내부업무자료 참조.

31) 우정사업본부 내부업무자료 참조.

가능하다는 한계가 있다. 특히, 2면을 기준으로 할 때 문서 당 총 9번의 계인 및 표지부착이 필요하다.

3. 내용증명의 법적 지위

(1) 내용증명의 법적 성질

내용증명서비스는 공증행위(公證行爲)의 일종으로 볼 수 있다. 통상 공증행위는 행정주체가 특정사실 또는 법률관계의 존부를 공적으로 증명하는 준법률적 행정행위라고 설명되는데,³²⁾ 공증제도를 “私人 사이의 법률생활에 관계하는 문서에 대하여 그 성립·내용·작성 연월일 등에 관하여 나중에 다툼이 생길 경우에 대비하여 공적 기관이 관여하여 법정의 효과를 수반하는 공권력에 의한 증명에 의하여 문서의 증거력을 높이고 그 내용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으로 설명하기도 한다.³³⁾ “내용문서의 발송”이라는 사실을 행정주체인 우체국이 공적 증거력을 부여하는 내용증명은 강학상 공증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공증행위의 법률효과는 개별 법률의 규정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그러나 공증은 원칙적으로 공정력(公定力)을 갖지는 않지만 반증(反證)에 의해서 번복되기 전까지는 일단 진실한 것으로 추정되는 효력을 가진다.³⁴⁾ 따라서 내용증명의 추정효에 관한 명문의 규정은 없으나, 공행정기관인 우체국에 의해서 증명된 발송사실은 진실한 증거로 추정된다. 대법원도 “... 내용증명 우편물이 발송되고 반송되지 아니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그 무렵에 송달되었다고 볼 것”이라는 입장이다.³⁵⁾

32) 박균성, 「제13판 행정법강의」, 박영사, 2016, 244쪽, 정하중, 「행정법개론(제9판)」, 법문사, 2015, 212쪽, 법제처·한국법제연구원, 「법령용어사례집(상)」, 2003, 271쪽 및 현암사, 「법률용어사전」, 2001, 159쪽 참조.

33) 전병서, 「각국의 공증법제 비교 연구」, 법무부, 2008, 1쪽.

34) 박균성, 앞의 책, 244쪽 및 정하중, 앞의 책, 213쪽 참조.

35) 대법원 1980.1.15. 선고 79다1498 판결, 1997.2.25. 선고 96다38322 판결.

내용증명서비스는 사서증서의 인증과 유사한 공증행위라고 할 수 있다. 「공증인법」은 공증인의 정의와 직무 등 공증사무에 관한 일반적 규정을 두고 있다. 공증인은 공증에 관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임명공증인(법무부장관으로부터 임명을 받은 사람)과 인가공증인(요건을 갖추어 공증인가를 받은 법무법인 등)을 말하며, 공정증서(公正證書)의 작성과 사서증서(私署證書)의 인증을 주요직무로 한다.³⁶⁾ 공증인이 공무원의 직위로 작성한 증서는 진정한 공문서로 추정되며,³⁷⁾ 공정증서등본은 형사소송에 있어서 당연히 증거능력이 있는 서류에 해당한다.³⁸⁾ 이렇듯 공정증서는 공문서로서 매우 강력한 증거력을 가지지만, 공정증서의 작성은 그 작성주체를 공증인으로 하므로, 발송인이 작성하여 우편관서에 “내용문서의 발송사실의 증명”을 요청하는 내용증명과는 비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반면에 사서증서의 인증은 사인(私人)이 작성한 문서를 대상으로 행정주체가 증명력을 보장한다는 점에서 내용증명과 공통점이 있다. 공증인이 인증한 사서증서는 공정증서와 같은 효력을 인정받지는 못하지만,³⁹⁾ 공증인이 사서증서를 인증함에 있어서 그와 같은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았다는 등의 사실이 주장·입증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진정성립이 추정된다.⁴⁰⁾ 즉, 당해 내용문서가 그 작성명의자의 의사에 따라 작성

36) 「공증인법」 제1조의2 제1호 및 제2조

37) 「공증인법」 제2조·제3조 및 「민사소송법」 제356조 제1항

38) 「형사소송법」 제315조

39) 대법원은 “... 사서증서 인증서 중 인증 기재 부분은 공문서에 해당한다고 하겠으나, 위와 같은 내용의 인증이 있었다고 하여 사서증서의 기재 내용이 공문서인 인증 기재 부분의 내용을 구성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사서증서의 기재 내용을 일부 변조한 행위는 공문서변조죄가 아니라 사문서변조죄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으며(대법원 2005.3.24. 선고 2003도2144 판결),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와 관련하여 “... 공정증서란 권리의무에 관한 공정증서를 가리키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공증인이 인증한 사서증서는 위 법조에서 말하는 공정증서 원본이 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1984.10.23. 선고 84도1217 판결, 대법원 1975.9.9. 선고 75도331 판결).

40) “...공증인이 사서증서의 인증을 함에 있어서는 공증인법에 따라 반드시 촉탁인

되었다는 추정력이 인정된다. 즉, 내용증명서비스는 사인(私人)이 작성한 내용문서를 대상으로 행정주체(우체국)가 그 발송사실에 대한 공적 증거력을 부여함으로써 추정효를 발생시키는 공증행위라는 점에서 사서증서의 인증과 유사한 점이 있다. 다만, 사서증서의 인증은 내용문서의 진정성 내지 진실성을 증명하지는 않는다는 점은 내용증명과 유사하지만,⁴¹⁾ 사서증서의 인증이 증명하고자 하는바는 내용문서의 진정성립인 반면에 내용증명은 내용문서의 발송사실을 증명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한편, 독일 및 일본, 미국 등에서 전자공증제도는 제도화되어 시행중에 있으며,⁴²⁾ 우리나라는 2009년 「공증인법」 개정을 통해 전자문서 및 전자화문서에 전자적 방식으로 인증을 부여하는 전자공증제도를 도입하였다(「공증인법」 제1조의2 제5호 및 제66조의3부터 제66조의11까지).⁴³⁾

(2) 내용증명의 법적 효과

내용증명은 ① 우체국(역무주체)이 ② 문서발송 사실을 ③ 증명하는 특수취급제도로서, 증명대상은 ④ 발송사실과 ⑤ 발송 시점, ⑥ 문서

의 확인(제27조)이나 대리촉탁인의 확인(제30조) 및 그 대리권의 증명(제31조) 등의 절차를 미리 거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공증인이 사서증서를 인증함에 있어서 그와 같은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았다는 등의 사실이 주장·입증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증인이 인증한 사서증서의 진정성립은 추정된다.”(대법원 2009.1.16. 자 2008스119 결정, 대법원 1992.7.28. 선고 91다35816 판결, 대법원 1991.3.27. 선고 90다17187 판결, 대법원 1988.3.8. 선고 87다카1448 판결)

41) “사서증서의 인증…은 문서가 작성명의인의 의사에 기하여 작성된 것을 증명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인증의 효과로 직접 문서의 성립이 증명되는 것은 아니고, 해당 문서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의 진정이 증명되고, 그것에 의하여 문서의 성립이 추정”된다(전병서, 앞의 책, 15~16쪽).

42) 각국의 전자공증제도에 관한 내용은 구슬, “독일의 전자공증제도”, 「최신외국법 제정보」 2013년 제6호, 2013. 8, 25~37쪽 및 이정현, “일본의 전자공증제도”, 「최신외국법제정보」 2013년 제7호, 2013. 10, 4~16쪽, 김도년, “미국의 전자공증제도”, 「최신외국법제정보」 2014년 제1호, 2014. 3, 33~48쪽 참조.

43) 법무부장관이 공증인 중에서 지정공증인으로 지정한 자가 전자문서·전자화문서에 관한 공증사무를 취급할 수 있다.

의 내용이며, ⑦ 등기취급을 전제로 ⑧ 우체국창구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발송된다. 비록 내용증명은 국가에 의해서 독점적으로 제공되고, 우체국이라는 공행정기관에 통해 일정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비스임에는 틀림없지만, 증명의 대상은 해당 내용문서가 수취인에게 발송된 사실에 국한될 뿐 해당 문서의 내용의 진정성에는 미치지 아니한다. 즉, 해당문서의 내용 그리고 해당문서 또는 문서에 포함된 의사표시의 도달에 따른 법률효과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단지 우체국에서 내용증명우편물을 발송한 사실과 발송한 시점, 내용문서에 기재된 내용을 증명할 뿐이다.

판례도 같은 취지에서 “내용증명 우편물이 발송되고 달리 반송되지 아니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그 무렵에 송달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하면서,⁴⁴⁾ “접수우체국 담당공무원이 내용증명우편물을 내용문서 원본과 등본을 대조하여 서로 부합함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는 것은 관계 법령에 따라 대량의 내용증명우편물을 취급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기계적·형식적인 업무처리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이러한 절차를 거친다고 하여 국가가 그 내용증명우편물에 담긴 내용을 알거나 알 수 있다고 …… 보는 것은 합리적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⁴⁵⁾

한편, 우편관서가 「우편법」에 따라 언제(발송시점), 어떤 내용의 문서(문서의 내용)를 누가 누구에게 발송한 것인지(발송사실)를 증명하는 제도이지만, 그 증명의 법적 효력은 명확하지는 않다. 즉, 우체국이 증명하는 대상은 문서의 발송사실일 뿐 문서 내용의 진실성은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점은 명확하지만, 국가에 의해서 독점적으로 제공되는 서비스인 내용증명에 있어서 우체국의 증명이 가지는 법적 효력에 대한 논의는 발견하기 어렵다. 다만, 내용증명은 채권관계에 있

44) 1997.2.25. 선고 96다38322 판결, 대법원 1980.1.15. 선고 79다1498 판결.

45) 대법원 2009.7.23. 선고 2006다81325 판결.

어서 시효의 중단⁴⁶⁾ 그밖에 일정한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의사표시 또는 의사통지를 함에 있어서 증거로 삼을 목적 또는 심리적 압박수단 등으로 사용되는 것이 상당수라고 할 것이다. 우리 「민사소송법」은 증거에 있어서 자유심증주의⁴⁷⁾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공행정기관인 우체국에 의해 증명된 발송사실은 진실한 증거로 추정⁴⁸⁾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에서 우체국의 증거가 가지는 법적 효력에 대한 논의의 실익은 적을 것이다.⁴⁹⁾

(3) 법률요건으로서 내용증명

많은 경우 내용증명은 법률행위에 있어서 증거의 목적으로 사용되지만, 일부의 경우에는 법률행위에 있어서 형식요건으로 내용증명을 요구하기도 한다.

1) 필수적 형식요건 사례

의료 관련 법규의 상당수는 업무정지처분이 확정되면 그 기관을 양수한 자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된 법인에 처분의 효과가 승계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의료급여기관 및

46) 「민법」 제168조(소멸시효의 중단사유)

47) 「민사소송법」 제202조(자유심증주의)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자유로운 심증으로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사실주장이 진실한지 아닌지를 판단한다.

48) 「공증인법」 제57조부터 제66조의2까지는 “사서증서의 인증”을 규정하고 있다. 사서증서의 인증은 그 내용의 진실성을 대상으로 하지는 아니하며, 작성명의자에 의해서 사서증서가 작성된 것이라는 사실을 대상으로 한다. 공증인에 의한 사서증서의 인증과 관련하여, 대법원은 “……공증인법에 규정된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았다는 사실이 주장·입증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증인이 인증한 사서증서의 진정성립은 추정”된다고 판시하고 있는데(대법원 2008.12.24. 선고 2008두17806 판결), 우체국에 의한 내용증명에 있어서도 같은 해석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49) 본 연구는 현재 실물 문서 위주로 처리되는 내용증명의 전자화의 가능성과 제도적 보완책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므로, 내용증명에 관한 여타 법적 이슈는 후속연구에서 이루어질 것을 기대한다.

요양기관, 치과기공소·안경업소의 개설자가 업무정지처분을 받았거나 업무정지처분의 절차가 진행되면, 그 사실을 내용증명으로 양수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에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의료급여법」 제2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2조, 「국민건강보험법」 제9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60조,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5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4조의2).

일부 법령은 대항요건의 특례와 관련하여 내용증명우편을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채권유동화계획 또는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른 주택저당채권의 양도등⁵⁰⁾은 양도인 또는 양수인이 그 사실을 채무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하거나 채무자가 그 양도등을 승낙하지 아니하면 채무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Covered Bond)을 발행하는 금융회사등 또는 기초자산집합 감시인이 기초자산집합(Cover Pool)의 등록사실과 감시인의 처분권한에 관한 내용을 채무자에게 대항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해당 기초자산집합에 포함되는 채권의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승낙하여야 한다. 그러나 2회 이상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여 통지를 하였으나 소재불명(所在不明) 등으로 반송된 경우에는 둘 이상의 일간신문⁵¹⁾⁵²⁾에 그 사실을 공고하는 경우에는 통지한 것으로 간주된다(「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26조 제1항 및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채권의 확정 일자와 관련하여 내용증명우편을 요건으로 하는 입법례도 있다. 채권유동화계획·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양도 또는 신탁하려는 주택저당채권·유동화자산이 근저당권과 관련된 경우 채권을

50) 주택저당채권의 양도·신탁 또는 반환을 말한다.

51) 채무자의 주소지를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여야 하고,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이 하나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52) 기초자산집합(Cover Pool)의 등록사실의 경우에는 일간신문 공고 외에 발행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공고도 허용된다.

확정하여 추가로 채권을 발생시키지 아니하고 그 채권의 전부를 양도·신탁하겠다는 의사를 기재한 통지서를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한 다음날에 확정된 것으로 간주한다(「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27조 제1항 및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7조의2).⁵³⁾

주택·개발에 관한 동의철회 또는 반대의사표시에 대하여 내용증명에 의한 서면주의를 취하고 있는 입법례가 다수 존재한다. ① 농어촌마을 정비조합 설립 및 실시계획에 대한 동의의 철회 또는 반대의사표시⁵⁴⁾와 ② 도시개발사업의 계획에 대한 동의의 철회,⁵⁵⁾ ③ 주택재개발사업·주택재건축사업 조합 설립에 대한 동의철회 또는 반대의사표시,⁵⁶⁾ ④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 제안에 대한 동의철회,⁵⁷⁾ ⑤ 산업단지 재생사업지구 지정에 대한 동의철회,⁵⁸⁾ ⑥ 지역개발사업 시행에 관한 동의철회⁵⁹⁾ 등은 내용증명의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한편, 일부 약관 및 표준계약서에서 의사표시 또는 통지를 내용증명으로 하도록 정하고 있는 사례가 있다.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과 「대부거래 표준약관」은 채무자가 “상계통지나 기한전의 채무변제 청구 등 중요한 의사표시는 배달증명부 내용증명”에 의한 경우만 도달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이외에 건설기술자 및 측량기술자의 퇴직신고⁶⁰⁾와 지명경쟁에 의한 입찰로 리모델링 또는 정비사업⁶¹⁾의 시공자를 선정하는 경우에 있어

53) 그러나 채무자가 1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4)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6조 제3항

55)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제7조 제2항

56)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8조 제5항

57)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1조 제3항

58)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4조 제2항

59)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제2항

60) 「건설기술자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 제6조 제5항 및 「측량기술자의 학력·경력 인정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제5항

6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정비사업을 말한다.

서 입찰대상자에 대한 통지⁶²⁾, 방위사업 계약의 해제·해지에 앞선 최고⁶³⁾ 등도 내용증명을 요건으로 하고 있다.

2) 예시적 사례

일부 법령은 내용증명을 의사표시 또는 통지를 위한 형식요건의 일종으로 열거하고 있다.

앞서 살펴본바와 같이 의료급여기관·요양기관 등의 경우에는 행정 제재처분을 받았거나 그 절차가 진행 중이면, 그 사실을 내용증명 및 배달증명으로 양수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에게 통보하여야 하는데, 장기요양기관의 경우에는 그 통보를 내용증명 및 배달증명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7조의4 및 동법 시행규칙 제29조의4).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를 내용증명우편 등 제공시점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동법 제7조 제1항).

하도급거래에 있어서 원사업자가 제조등의 위탁을 하거나 추가·변경위탁함에 있어서 서면으로 하지 않거나,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등과 계약을 체결하면서 서면을 주지 않으면, 수급사업자 및 납품업자등은 서면으로 통지하여 그 내용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요청을 받은 자는 이에 대해 서면으로 회신을 발송하여야 한다.⁶⁴⁾ 또한, 「건설산업기본법」도 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추가·변경공사⁶⁵⁾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요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62) 「리모델링 시공자 선정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8조 및 「정비사업의 시공자 선정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8조

63) 「방위사업관리규정」(방위사업청훈령) 제371조

64)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5항·제6항 및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 제4항·제5항

65) 당초 하도급계약의 산출내역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공사를 말한다.

(제36조의2 제1항). 이들 각각에 있어서 서면은 ‘내용 및 수신 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는데, 그 대표적인 방식이 내용증명우편이다.⁶⁶⁾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분양사업자가 분양한 건축물에 대하여 사용승인 전에 분양받은 자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설계변경을 하려면 분양받은 자 전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동법 제7조 제1항). 이때 분양받은 자의 동의는 서면동의여야 하고, 동의를 구하기 전에 해당 설계변경을 한 건축사의 도장이 찍힌 관련 문서와 설명서를 내용증명우편으로 보내거나 직접 내주어야 한다(동법 시행규칙 제8조 제1항).⁶⁷⁾

66)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제1항 및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1항,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의 7 제1항, 「건설업 표준하도급계약서」 제1조의2 제3항

67) 동법은 분양받은 자 전원에게 알려야 하는 일정한 설계변경 사항을 법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통지도 내용증명우편으로 행하거나 직접 내주어야 한다(동법 제7조제 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8조 제3항).

제 3 장 서면의 전자화에 관한 입법체계

1. 서면의 전자화 동향

서면 또는 문서는 “글이나 기호 따위로 일정한 의사나 관념 또는 사상을 나타낸 것”⁶⁸⁾ 또는 “문자, 그 밖의 기호의 조합에 의하여 사상적 의미를 표현한 유형물”⁶⁹⁾을 말한다. 문서는 종이가 아닌 천 또는 가죽 등인 경우도 해당하지만, 과거 대부분의 정보는 종이문서를 기반으로 유통되어 왔다. 그러나 정보화의 진전과 함께 정보의 생산·기록·저장·유통·활용은 점차 전자적 수단을 통해 이루어지게 되었고, 전자화된 형태로 생성·유통되는 문서의 비중이 커지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변화에 따라 전자문서 또는 전자화문서 등 전자화된 서면의 효력과 유통에 관한 다양한 제도적 기반정비가 이루어져 왔다. 특히 공공분야에 있어서는 종이문서의 감축을 위한 책무를 규정하고 있다. 행정기관·공공기관은 전자화 등을 통해 종이문서의 작성·접수·유통 및 보관을 최소화하고 종이문서를 지속적으로 줄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하고, 문서작성·보고과정에서 종이문서의 불필요한 출력을 최소화하도록 일하는 방식 등을 개선하여야 한다(「전자정부법」 제33조). 이의 추진을 위하여 정부는 2010년에 「녹색경제 활성화를 위한 전자문서 확산 방안」⁷⁰⁾ 등 서면의 전자화를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고 있다.

68) 이준호,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상 전자문서의 형식요건에 관한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13, 19쪽.

69) 김제완 외, 「새로운 형태의 전자적 의사표시와 전자문서에 관한 연구」, 법무부, 2011, 39쪽.

70) 녹색성장위원회는 2010년 12월 발표한 정책에서 “전자문서 도입 확산을 통한 업무 효율성의 획기적 제고” 등을 목표로 하여 종이문서를 단계적으로 전자문서로 전환함으로써 종이/물류 비용절감을 극대화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였다.

2. 공공분야와 민간분야

(1) 공공분야

1) 전자화된 서면 관련 용어

공공분야에 있어서 서면의 전자화에 관하여 규율하는 일반법은 존재하지 않는다. 「전자정부법」과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등에서 관련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전자문서·전자화문서 등 서면의 전자화에 관하여 통일적으로 규율하는 일반법이 존재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전자문서와 전자화문서, 공문서, 전자기록물 등 유관 개념에 대하여 개별법에서 각각 달리 용어를 규정하고 있는 실정이다.

<표 2> 서면의 전자화에 관한 공공분야 용어정의

용 어	관련 규정	정의 내용
전자문서	「전자정부법」 제2조 제7호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지닌 장치에 의하여 전자적인 형태로 작성 <u>되어</u> 송수신되거나 저장되는 표준화된 정보
	「행정절차법」 제2조 제8호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에 의하여 전자적인 형태로 작성 <u>되어</u> 송신·수신 또는 저장된 정보
	「약식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의하여 전자적인 형태로 작성 <u>되어</u> 송신·수신되거나 저장되는 정보 로서 문서형식이 표준화된 것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에 의하여 전자적인 형태로 작성되거나 변환되어 송신·수신 또는 저장되는 정보

용 어	관련 규정	정의 내용
	「독촉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폐지) 제2조 제1호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갖춘 장치에 의하여 전자적인 형태로 작성되어 송·수신 또는 저장되는 정보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조 제2호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에 의하여 전자적인 형태로 작성되 <u>거나</u> 송신·수신 또는 저장된 문서
전자화문서	「전자정부법」 제2조 제8호	종이문서와 그 밖에 전자적 형태로 작성되지 아니한 문서를 정보시스템이 처리할 수 있는 형태로 변환한 문서
	「약식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종이문서나 그 밖에 전자적 형태로 작성되지 아니한 문서를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이 처리할 수 있는 형태로 변환한 문서
전자기록물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컴퓨터 등의 정보처리장치에 의하여 생산·관리되는 기록정보 자료
기록물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	공공기관이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접수한 문서·도서·대장·카드·도면·시청각물·전자문서 등 모든 형태의 기록정보 자료와 행정박물관(行政博物館)
공문서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조 제1호	행정기관에서 공무상 작성하거나 시행하는 문서(도면·사진·디스크·테이프·필름·슬라이드·전자문서 등의 특수매체기록 포함)와 행정기관이 접수한 모든 문서

2) 서면의 전자적 처리

행정기관·공공기관의 문서는 전자문서를 기본으로 작성, 발송, 접수, 보관, 보존 및 활용되어야 하며(「전자정부법」 제25조 제1항), 그

처리절차⁷¹⁾는 전자문서시스템 또는 업무관리시스템 상에서 전자적으로 처리하여야 한다(「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5조). 이와 같은 취지로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는 공공기관·기록물관리기관을 대상으로 “기록물이 전자적으로 생산·관리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고 “전자적 형태로 생산되지 아니한 기록물도 전자적으로 관리”되도록 노력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행정기관·공공기관이 작성하는 전자문서는 그 문서에 대하여 전자적인 수단에 의한 결재를 받음으로써 성립하고(「전자정부법」 제26조 제1항),⁷²⁾ 그 즉시 전자기록생산시스템⁷³⁾에 등록된다.

행정기관의 문서는 그 업무의 성질상 적절하지 아니하거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발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16조 제1항), 개인, 법인 또는 단체가 본인임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전자문서를 행정기관등에 송신하려는 경우에는 공인전자서명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본인임을 확인하기 위하여 인정되는 전자적 수단을 이용하여 송신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이 행정기관과 전자문서를 유통하는 경우에는 행정전자서명을 이용하여 송신·수신하여야 한다(「전자정부법」 제27조 제1항).

71) 문서의 기안 및 검토, 협조, 결재, 등록, 시행, 분류, 편철, 보관, 보존, 이관, 접수, 배부, 공람, 검색, 활용 등을 말한다.

72) 행정기관이 작성하는 전자문서에는 행정전자서명 또는 공인전자서명을 사용한다(「전자정부법」 제29조 제1항).

73) 전자문서시스템(문서의 기안·검토·협조·결재·등록·시행·분류·편철·보관·보존·이관·접수·배부·공람·검색·활용 등 모든 처리절차가 전자적으로 처리되는 시스템)과 업무관리시스템(행정기관이 업무처리의 모든 과정을 과제관리카드 및 문서관리카드 등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 행정정보시스템(행정기관이 행정정보를 생산·수집·가공·저장·검색·제공·송신·수신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드웨어·소프트웨어·데이터베이스 등을 통합한 시스템)을 말한다(「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7호 및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조).

전자문서로 민원을 신청, 신고 또는 제출하거나 민원결과 등을 통지, 통보 또는 고지하는 경우 전자문서에 첨부되는 서류는 전자화문서로도 할 수 있다(「전자정부법」 제7조 제3항). 하지만, 「행정절차법」은 행정청이 처분을 함에 있어서 당사자등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해서 전자문서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24조 제1항).

3) 전자적 서면의 효력

전자문서 및 전자화문서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종이문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전자정부법」 제26조 제3항). 행정기관·공공기관에 송신한 전자문서는 그 전자문서의 송신시점이 정보시스템에 의하여 전자적으로 기록된 때에 송신자가 발송한 것으로 보며(같은 법 제28조 제1항), 행정기관등이 송신한 전자문서는 수신자가 지정한 정보시스템 등에 입력된 때에 그 수신자에게 도달된 것으로 본다(같은 조 제2항).⁷⁴⁾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은 민사소송에 있어 당사자와 소송대리인 등은 법원에 제출할 서류를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제5조 제1항). 동법에 따라 작성·제출·송달·보존하는 전자문서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민사소송과 가사소송, 행정소송, 특허소송, 민사집행, 회생·파산사건, 비송사건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른 문서로 본다(제5조 제2항). 한편,

우리 「민사소송법」은 자유심증주의를 원칙으로 삼고 있는데, 자유심증주의란 법원이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자유로운 심증으로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사실주장이 진실한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것을 말한

74) 지정한 정보시스템 등이 없는 경우에는 수신자가 관리하는 정보시스템 등에 입력된 때에 그 수신자에게 도달된 것으로 본다.

다(제202조). 민사소송은 증거능력에 제한이 없으므로 전자화된 서면의 증거능력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지만, 전자화된 서면의 증거능력 및 증명력 인정을 위한 요건 등은 명확하지 않다.

(2) 민간분야

1) 전자화된 서면 관련 용어

전자화된 서면이 사인(私人) 간에 유통되는 사문서인 경우에는 작성 방식과 그 효력 등은 사적 자치의 원칙이 적용된다고 할 것이지만, 우리 법제는 거래의 안전을 위해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즉, 민간분야에 있어서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과 「전자서명법」이 서면의 전자화에 관한 일반법으로 기능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별 법률에서 전자화된 서면에 관한 개념을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표 3> 서면의 전자화에 관한 민간분야 용어정의

용 어	관련 규정	정의 내용
전자문서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 제1호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전자적 형태로 작성, 송신·수신 또는 저장된 정보
	「전자서명법」 제2조 제1호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전자적 형태로 작성 되어 송신 또는 수신되거나 저장된 정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에 의하여 전자적인 형태로 작성 되어 송수신되거나 저장된 문서형식의 자료 로서 표준화 된 것
전자화문서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5조 제2항	전자화대상문서(종이문서나 그 밖에 전자적 형태로 작성되지 아니한 문서)를 정보처리시스템이 처리할 수 있는 형태로 변환한 문서

용 어	관련 규정	정의 내용
	「주택임대차계약증서의 확정일자 부여 및 정보제공에 관한 규칙」	종이문서와 그 밖에 전자적 형태로 작성되지 아니한 문서를 정보시스템이 처리할 수 있는 형태로 변환한 주택임대차계약증서

2) 서면의 전자적 처리

사적영역에 있어서 당사자 간의 합의가 존재하는 경우에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음은 물론이다. 반면에 사적영역에 있어서 당사자의 합의가 없는 전자화된 서면의 처리를 강제하는 것도 타당하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은 거래의 안전을 위해서 전자화된 서면의 법률적 효력 등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면서도 사적자치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즉, 작성자와 수신자가 송신·수신의 시기 및 장소, 작성자가 송신한 것으로 보는 경우, 수신한 전자문서의 독립성, 수신확인에 대하여 동법과 달리 약정할 수 있다(동법 제 10조).

3) 전자적 서면의 효력

공공분야에 있어서 「전자정부법」은 전자문서와 전자화문서에 대하여 종이문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은 달리 정하고 있다. 즉, “전자문서는 … 전자적 형태로 되어 있다는 이유로 문서로서의 효력이 부인되지 아니한다”고 함으로써 전자화문서의 일반적 효력에 대한 규정이 없다(「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4조 제1항). 다만, 개별 규정에서 전자문서 및 전자화문서의 보관 및 송신·수신 등과 관련된 효력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제3절에서 상세히 살펴보기로 한다.

3. 전자문서와 전자화문서

(1) 전자문서

1) 전자문서의 일반적 효력

<표 5>와 <표 6>의 비교에서 볼 수 있듯이 공공분야와 민간분야를 막론하고 각 법률은 전자문서의 개념에서 약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각 분야에 있어서 전자문서에 관한 일반법으로 이해되는 「전자정부법」과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을 기준으로 살펴볼 때, 전자서는 “작성되어” 송수신 또는 저장된 것으로 보고 있고, 후자는 작성을 송수신 또는 저장을 병렬적으로 열거하고 있다는 점이 다르며, 표준화를 요건으로 하느냐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 두 법이 모두 전자문서와 함께 전자화문서를 개념정의하고 있다는 점에서 전자문서는 대상문서가 존재하지 않고 그 자체로 전자적으로 작성된 것을 말하는 것으로 볼 것이다. 이러한 전자문서에 대하여 두 법의 효력규정이 차이를 보이는 점은 앞서 살펴보았지만, 일반적 효력을 인정하고 있는 점은 동일하다.⁷⁵⁾

「민법」은 보증의 의사가 전자적 형태로 표시된 경우에는 효력을 인정하고 있지 않지만,⁷⁶⁾ 보증인이 자기의 영업 또는 사업으로 작성한 보증의 의사가 표시된 전자문서는 유효한 보증의 서면으로 간주된다(「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4조 제2항).

75) 「전자정부법」 제26조 제3항 및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4조 제1항

76) 제428조의2(보증의 방식) ① 보증은 그 의사가 보증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서면으로 표시되어야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보증의 의사가 전자적 형태로 표시된 경우에는 효력이 없다.

2) 전자문서의 보관효

전자문서를 보관함으로써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문서의 보관을 갈음할 수 있는데, 이때 전자문서는 ① 그 내용을 열람할 수 있어야 하고, ② 작성 및 송신·수신된 때의 형태 또는 그와 같이 재현될 수 있는 형태로 보존되어 있어야 하며, ③ 작성자, 수신자 및 송신·수신 일시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부분이 보존되어 있어야 한다(「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5조 제1항). 공인전자문서센터에 의한 보관에 대해서는 보다 강한 효과를 부여하고 있다. 즉, 공인전자문서센터가 전자문서를 보관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 보관의 유효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간주하며(동법 제31조의6),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된 전자문서는 보관기간에는 그 내용이 변경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동법 제31조의7 제1항).

3) 전자문서에 의한 사인(私人)의 문서행위의 효력

일정한 사인(私人)의 문서행위가 전자문서로 이루어진 경우에도 관련 법률에 따른 효과가 인정된다. 즉, 특정 법률이 정하고 있는 기록·보고·보관·비치 또는 작성 등의 행위가 전자문서로 행하여진 경우 해당 법률에 따른 행위로 간주된다(「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4조 제3항 및 별표). 전자문서로 할 수 있는 사인(私人)의 문서행위⁷⁷⁾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과 「사립학교법」, 「약사법」 등 31개 법률의 60가지의 행위가 열거되어 있다.

4) 전자문서의 송신·수신

전자문서는 수신자 또는 그 대리인이 해당 전자문서를 수신할 수 있는 정보처리시스템에 입력한 때에 송신된 것으로 보며, 수신자가

77) 전자문서로 할 수 있는 사인(私人)의 문서행위는 부록 참조.

지정한 정보처리시스템에 입력된 때 또는 지정된 정보처리시스템이 아닌 정보처리시스템으로부터 수신자가 출력한 때, (정보처리시스템을 지정하지 않았으면) 수신자가 관리하는 정보처리시스템에 입력된 때에 수신된 것으로 본다(「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6조 제1항·제2항).

(2) 전자화문서

1) 전자화문서의 일반적 효력

「전자정부법」은 전자화문서의 일반효를 규정하고 있지만(제26조 제3항),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은 전자화문서의 일반효에 관한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다만, 전자문서가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전자적 형태로 작성, 송신·수신 또는 저장된 정보”로 정의되므로, 전자적으로 변환되어 저장되는 전자화문서도 전자문서에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전자문서의 일반효를 규정하고 있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4조 제1항에서 전자화문서의 일반효의 근거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전자문서의 보관”을 조문명으로 하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5조는 제1항에서 전자문서의 보관을 규정하고 제2항에서 전자화문서의 보관에서 대해서 규정하고 있다는 점도 이러한 해석에 힘을 실어 줄 수 있을 것이다. 같은 맥락에서 보면, “공인전자문서센터가 전자문서를 보관하는 경우에는 제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전자문서의 보관이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제31조의6에서 “(제5조)제2항에 따른 보관”도 전자문서의 보관이므로 “(제5조)제2항의 전자화문서”도 전자문서라는 주장이 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은 전자화문서의 일반효에 관한 근거규정이 없다고 할 것이다. 첫째, 제6조는 동조 이하에서 전자문서가 전자화문서를 포함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제5조까지의 전자문서의 개념은 전자화문서를 포함하지 않는다는 반대해석이 가능하다. 둘째, 개별 조문의 제명이 해당 조문의 규율내용을 추상적으로 표상하는 역할을 하고 해석의 지표로서 일부 기능을 할 수는 있지만, 조문명으로 인하여 개별법문의 자구에 반하는 규범적 해석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제5조의 조문명인 “전자문서의 보관”으로 인하여, 제6조의 명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전자화문서가 전자문서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다. 셋째, 제31조의6은 “제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전자문서의 보관”을 규정하고 있지만, 이때 전자문서는 제6조에 따라 전자화문서를 포함하므로, 공인전자문서센터가 전자문서 또는 전자화문서를 보관하는 경우에는 “전자화문서를 포함하는 전자문서의 보관”이 제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행해진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넷째, 제2조 제9호의 전자문서가 전자화문서를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면, 전자문서의 효력에 관한 제4조의 “전자문서” 역시 전자화문서를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이렇게 보면 제4조 제1항은 전자화문서의 일반효에 관한 규정으로 보아야 할 뿐만 아니라, 전자화문서에 의한 보증의 의사표시도 인정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하고(제4조 제2항 참조), “별표”에서 열거하고 있는 법률에 따른 효과가 인정되는 사인(私人)의 문서행위도 전자화문서를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는 문제가 발생한다.⁷⁸⁾

78) 예를 들어 금융감독원장은 여신전문금융회사에 대하여 검사에 필요한 장부·기록문서와 그 밖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데(「여신전문금융업법」 제53조의2 제3항),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5조 제3항 및 별표는 이를 전자문서로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 제9호의 전자문서에 전자화문서가 포함되는 것으로 보면, 「여신전문금융업법」 제53조의2 제3항

따라서 입법자의 의도와 일치하지 않는다거나 입법의 불비라는 시각은 차치하더라도 현행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의 규정상으로는 전자화문서의 일반효에 관한 근거는 없다고 할 것이다. 또한,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3조는 적용범위를 “모든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전자문서의 경우에는 전자거래와 관련이 없어도 동법이 적용되지만, 전자화문서의 경우에는 전자거래와 관련된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2) 전자화문서의 보관효

전자화문서를 보관함으로써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문서의 보관을 갈음할 수 있는데, 이때 전자화문서는 ① 전자화문서가 전자화대상문서와 그 내용 및 형태가 동일하여야 하고, ② 그 내용을 열람할 수 있어야 하고, ③ 작성 및 송신·수신된 때의 형태 또는 그와 같이 재현될 수 있는 형태로 보존되어 있어야 하며, ④ 작성자, 수신자 및 송신·수신 일시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부분이 보존되어 있어야 한다(「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5조 제2항). 공인전자문서센터에 의한 보관에 대하여 보다 강한 효과를 부여하는 것은 전자화문서에 있어서도 같다. 공인전자문서센터가 전자화문서를 보관⁷⁹⁾하는 경우에는 이를 충족하는 것으로 간주하며(동법 제31조의 6),⁸⁰⁾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된 전자화문서는 보관기간에는 그 내용

에 따른 장부·기록문서 등의 제출도 원본 이외의 전자화문서로 행할 수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79)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은 제6조 이하의 규정에서 전자문서에 전자화문서가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제2조 제9호에서 “전자문서의 보관 또는 증명”과 “그 밖에 전자문서 관련 업무”를 “전자문서보관등”으로 축약하고 있으므로, 제31조의2부터 제31조의17까지의 공인전자문서센터가 전자화문서를 보관하는 것은 “그 밖에 전자문서 관련 업무”로 보아야 할 것이다.

80) 법문은 “전자문서”로 명시하고 있지만, 제6조에서 전자문서가 전자화문서를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전자문서와 전자화문서를 모두 대상으로 한다.

이 변경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동법 제31조의7 제1항).

그리고 「상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상업장부와 영업에 관한 중요서류의 보존은 전자화문서로 보존할 수 있고(동법 시행령 제3조), 「국세기본법」에 따라 보관하여야 하는 장부 및 증거서류도 전자화문서로 변환하여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할 수 있다(제85조의3).

제 4 장 내용증명서면의 전자화를 위한 법제 개선방안

1. 내용증명서비스 전자화의 수요

(1) 내용증명서비스 전자화의 내용

내용증명서비스의 전자적 처리는 다양한 형태를 구상할 수 있지만, 단기적으로는 우체국 창구를 통하여 접수되는 내용증명의 전자화를 목표로 한다. 내용증명우편물을 발송하고자 하는 자가 내용문서 원본 및 그 등본 2통을 제출하는 대신에 원본 1부만을 제출하도록 하고, 해당 내용문서를 전자화문서로 변환함으로써 간인·계인·라벨링 등의 창구업무를 간소화하고, 발송우체국에 한정되는 열람을 전국 어디에서나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이다.

현재 접수우체국은 내용증명우편물을 접수하면 내용문서의 원본과 등본을 대조함으로써 내용의 일치여부를 확인하고, ‘내용증명라벨’ 등을 첩부하고, 계인(契印) 및 간인(間印)하여야 한다. 이에 반하여 창구 접수 내용증명의 전자화는 1부의 서면만을 제출받아 이를 스캔한 후에 전자 간인·라벨링하고, 2부의 등본을 출력하여 봉투에 넣고 봉합하여 발송한다.

<표 4> (일반)내용증명과 내용증명업무 전자화

	작 성	처 리	증 명	발 송 (송·수신)	재증명	열 램
일반 내용증명	종이 문서	종이 문서	종이 문서	종이 문서	종이 문서	종이 문서
내용증명 업무 전자화	종이 문서	전자화 문서	(출력된) 종이문서	(출력된) 종이문서	(출력된) 종이문서	전자 문서

(2) 내용증명서비스 전자화의 기대효과

우정사업본부는 내용증명서비스의 전자화를 통해서 비용감소와 고객만족도 제고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림 8> 내용증명서비스의 전자화의 비교⁸¹⁾

(평균접수 매수 2매 기준)

구분	As Is	➔	To Be
방법	Offline 방식	➔	Online 방식
제출통수	3부	➔	1부 (or 파일)
절차	원본·등본 대조 → 60초 수기 간인(계인) → 15초 라벨링·분리 → 20초 봉입 → 30초 발송* → 5초	➔	스캔(파일 열기) → 15초 전자 간인·라벨링 → 5초 2부출력 → 25초 봉입 → 20초 발송** → 5초
소요시간	130초	➔	70초
비고	창구대기시간 과다	➔	시간단축 비용 절감

* 발송인 1부 배부, 우체국 1부(서류/Offline) 보관, 수취인 1부 발송

** 발송인 1부 배부, 우체국 1부(전산이미지/Online) 보관, 수취인 1부 발송

우체국 창구접수 내용증명은 원본과 등본의 동일성 확인과 계인·간인·레이블부착 등의 업무에 130초가 소요되는데, 이러한 업무를 “원본(1부) 접수”와 “전자화문서 변환”을 통해 처리하면 절반가량으로 줄일 수 있다. 우체국 창구로 접수되는 7백여만통의 내용증명 관련 업무를 전자화하면, 우체국 업무의 감소와 이에 따른 경비의 대폭적인 절감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또한, 내용서비스를 전자화하는 경우

81) 우정사업본부 내부업무자료 참조.

내용증명 발송자가 우체국 창구에서 소비하는 시간 역시 단축될 뿐만 아니라, 내용증명에 있어서 제출하여야 하는 서면은 3통에서 1통으로 간소화할 수 있고, 업무의 전자화를 통하여 현재 발송우체국으로 제한되는 재증명과 열람을 전국단위로 확대할 수 있으므로 내용증명서비스를 이용하는 국민의 편익을 증진하는 효과가 기대할 수 있다.

2. 내용증명서면의 전자화 관련 유사제도

(1) 전자내용증명(e내용증명 또는 e-그린우편)

1) 전자내용증명의 개념

우리 우편법제는 선택적 우편역무의 일종으로 전자우편(電子郵便)을 규정하고 있다. 이때 전자우편은 일반적으로 인식하는 e-mail이 아니라 “우체국 창구나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전자적 형태로 접수된 통신문 등을 발송인이 의뢰한 형태로 출력·봉합하여 수취인에게 배달하는 제도”를 말한다(「우편법 시행규칙」 제25조 제1항 제12호).⁸²⁾ 즉, 전자적으로 접수한 내용을 물리적인 형태인 내용문서로 구현하여 수취인에게 실물을 배달하는 것을 말하므로, 전자적으로 작성 및 전송, 수신되는 e-mail과는 구분된다.

「우편법」상 전자우편은 고객이 내용문과 주소록을 우체국 창구에서 USB 등 전산매체에 담아 제출하거나 인터넷우체국에 접속하여 전자적으로 접수한다(「우편업무 취급 세칙」 제176조). 전자우편과 내용증명이 결합하면 전자우편물에 의하여 내용증명을 발송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이를 반영하여 「우편법 시행규칙」은 선택적 우편역무에 부가할 수 있는 우편역무를 규정하고 있는데, 전자우편에 부가할 수 있는

82) 인터넷우체국은 전자우편을 e-그린우편과 맞춤형편지로 세분화하고 있다(<http://service.epost.go.kr/comm.RetrievePostagSrvMain.postal>(2016년 7월 21일 방문)).

우편역무로서 등기, 배달증명, 국내특급우편과 함께 내용증명을 열거하고 있다(「우편법 시행규칙」 제25조 제3항, 별표 4 및 「우편업무 취급 세칙」 제177조 제1호). 같은 취지에서 우정사업본부고시인 「전자우편의 인쇄·봉합 등 취급조건 및 감액조건 등에 관한 고시」 역시 전자우편 부가취급서비스의 일종으로 내용증명을 명시하고 있다.

e내용증명은 우체국 창구 또는 인터넷우체국(www.epost.go.kr)을 통해 접수할 수 있는데, 우체국은 이를 출력하여 봉합한 후에 수취인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배달하게 된다. 따라서 전자우편(e-그린우편) 및 전자내용증명(e내용증명)은 서면의 전자화와는 그 방향성을 달리하는, 전자문서의 서면화를 통한 우편역무제공 형태라고 할 것이다.

<그림 9> e내용증명의 신청 및 조회⁸³⁾



83) 인터넷우체국으로부터 전자우편의 제작을 위탁받은 (주)포스트피아의 e-그린우편 안내(<http://www.epostopia.com/postmail/WhatEmail.hms>)와 인터넷우체국(<http://service.epost.go.kr/postal/front/econprf/pafay01b02.jsp>)의 그림을 결합함(2016년 7월 22일 방문).

2) 외국 사례

일본은 우리나라와 유사하게 내용증명우편을 전자화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24시간 접수하는 전자내용증명서비스(e내용증명)를 일본우편주식회사(日本郵便株式會社)가 운영하고 있다.

<그림 10> 日本 電子内容証明 案内⁸⁴⁾



電子内容証明サービスについて

電子内容証明サービスとは、インターネットを利用して、24時間 内容証明郵便を差し出すことができるサービスです。



24時間インターネットで差し出し可能

引受けはインターネットを通じて行われるため24時間差し出すことができ、時間を気にせず差し出せます。また、引受け後は自動的に内容証明文書が作成・照合処理されますので、簡単に差し出しを済ませることができます。



用途に合わせた差出方法

1通だけの差出し、完全/不完全同文内容証明・一括差出し、謄本一括返送などを組み合わせた差出し、差込差出しなど、用途に合わせて差出し選択ができます。詳細については、[こちら](#)からご確認ください。



アドレス帳機能による差出人、受取人入力

アドレス帳に差出人および受取人を登録しておけば、差出しの際の差出人、受取人の入力を簡単に済ませることができます。



選べる決済方法

お支払は便利なクレジットカード又は料金後納から選択できます。詳細については、[こちら](#)からご確認ください。

일본에 있어서 전자내용증명을 이용하려는 자가 이용자등록을 하며, 우체국은 이용자번호(ID)를 교부한다. 이용자등록을 마친 이용자가 내

84) https://e-naiyo.post.japanpost.jp/enaiyo_kaiin/enaiyo/enkn110/engm111.xhtml#(2016년 7월 16일 방문)

용증명문서를 작성하여 우체국에 송신하면, 우체국은 내용문서의 원본과 등본을 발송자와 수취인에게 배달하게 된다.

<그림 11> 일본 전자내용증명 절차도⁸⁵⁾



3) 내용증명서비스의 전자적 처리와의 비교

전자내용증명은 내용문과 주소록을 우체국 창구에서 USB 등 전산 매체에 담아 제출하거나 인터넷우체국에 접속하여 전자적으로 접수하지만,⁸⁶⁾ 내용증명서비스의 전자적 처리는 우체국 창구를 통하여 접수되는 실물서면을 전자화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즉, 전자내용증명은 내용문서가 전자문서로 작성·접수·처리됨에 반하여, 내용증명업무의 전자화는 실물로 작성·접수된 내용문서를 전자화문서로 변환하여 처리하므로, 양자간에 업무의 프로세스나 법적 지위도 달리하게 된다. 다만, 출력된 종이문서에 의해 내용문서의 증거가 이루어지고, 수취인에게도 봉투에 봉합된 실물 서면(출력된 종이문서)이 배달된다는 점은 공통된다.

85) <http://w-jimusho.com/nai5.html>(2016년 7월 17일 방문)

86) 「우편업무 취급 세칙」 제176조

<표 5> 내용증명업무 전자화와 전자내용증명

	작성	처리	증명	발송 (송·수신)	재증명	열람
내용증명 업무 전자화	종이 문서	전자화 문서	(출력된) 종이문서	(출력된) 종이문서	(출력된) 종이문서	전자 문서
전자 내용증명	전자 문서	전자 문서	(출력된) 종이문서	(출력된) 종이문서	(출력된) 종이문서	전자 문서

우정사업본부는 업무경감을 위하여 전자내용증명을 유도하고 있지만, 내용증명의 80% 이상은 여전히 우체국 창구접수로 집중되고 있는 점에서 알 수 있듯이 이용자들은 창구접수를 선호하고 있다. 그 이유는 편의성과 신속성, 비용, 인지도 등에서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첫째, 전자내용증명은 우체국을 방문하지 않아도 된다는 편의성이 있지만, 범용공인인증서 또는 아이핀(i-pin), 휴대폰인증 등 본인확인수단을 구비하고, 관련 SW를 설치하여야 하는 등 고령자·장애인 등 정보통신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이 낮은 계층에게는 접근장벽이 될 수도 있다. 내용문서는 인쇄된 것뿐만 아니라 필서(筆書)한 경우도 가능하다는 점에서 일부 계층에게 있어서는 실물 서면(종이문서)을 작성하여 우체국창구에서 접수하는 것이 보다 편리할 수도 있다. 둘째, 우체국창구에서 접수된 내용문서는 그 접수시각을 기점으로 발송이 이루어지지만, 전자내용증명은 제작 단계가 추가되므로 추가적인 시일이 소요될 수 있다. 셋째, 전자내용증명은 내용문서의 제작수수료와 발송인에게 배달된 우편요금 및 등기수수료가 추가로 발생하게 된다. 넷째, 전자내용증명에 대한 대중적 인지도가 기대만큼 높지 않다는 점도 창구접수 선호의 이유가 될 가능성이 있다.

(2) 공인전자주소제도

1) 공인전자주소의 개념

공인전자주소(샵(#)메일)는 전자문서의 송수신자를 식별하기 위하여 문자·숫자 등으로 구성되는 정보로서 전자문서·전자거래 진흥 전담기관에 등록된 주소를 말한다.⁸⁷⁾ 공인전자주소제도는 “전자문서의 송·수신 사실을 증명하는 전자문서 유통증명서를 발급하여 송·수신자 및 송수신 일시의 확인이 가능”하게 함으로써 “기업 및 개인이 전자문서를 안전하게 송수신할 수 있는 방안”으로 마련된 것이다.⁸⁸⁾

공인전자주소는 계정, 구분기호(#) 및 등록자정보로 구성되며,⁸⁹⁾ “계약.구매팀#한국인터넷진흥원.법인” 또는 “고객센터#동서남북쇼핑몰.사업”, “고지서#이하나.개인” 등으로 구성이 가능하다.⁹⁰⁾

<그림 12> 공인전자주소 체계⁹¹⁾



공인전자주소의 운영·관리체계는 등록관리기관(전자문서·전자거래 진흥 전담기관)과 등록대행기관(공인전자문서중계자⁹²⁾), 법인·기업·개인 등의 이용자로 이루어지며, 공인전자주소 홈페이지(www.npost.kr)에

87)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 제8호 및 제18조의4

88) 김현철, “행정기관과 공공기관 문서의 전자화에 관한 공법적 검토”, 「공법학연구」 제14권 제4호, 한국비교공법학회, 2013, 310쪽.

89) 「공인전자주소의 구성 및 체계 등에 관한 규정」(미래창조과학부고시) 제3조 제1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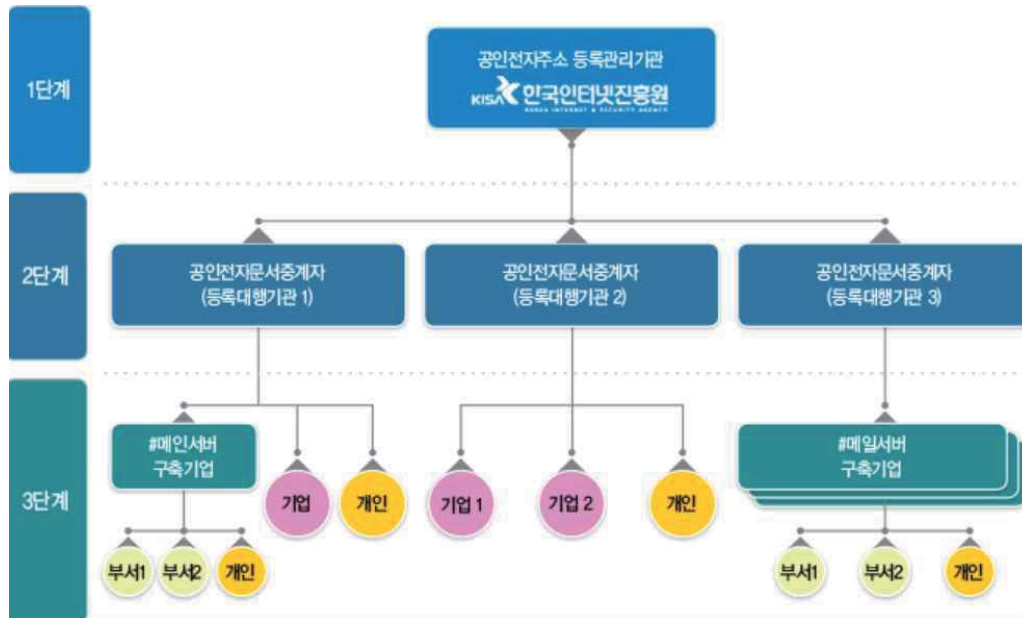
90) 한국인터넷진흥원, 「공인전자주소(샵메일) 설명 및 주요질문」, 2016, 5쪽.

91) https://www.npost.kr/pages/domain/intro_01_1.jsp(2016년 7월 23일 방문)

92)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31조의8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지정을 받고, 타인을 위하여 전자문서유통(전자문서의 송신·수신 또는 중계)을 하는 자를 말한다(동법 제2조 제10호).

서 등록대행기관(공인전자문서증계자)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그림 13> 공인전자주소 운영·관리 체계⁹³⁾



2) 공인전자주소의 효력

공인전자주소를 통해 전자문서가 송신 및 수신된 경우 전자문서의 송신·수신 일시와 송신자·수신자 등의 정보를 포함하는 유통정보가 생성되고, 작성자와 송신자는 유통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데, 적법하게 발급된 유통증명서는 유효한 것으로 추정된다.⁹⁴⁾

자동으로 공인전자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이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공인전자주소를 수집할 수 없고, 이렇게 수집된 공인전자주소를 판매하거나 제공해서도 안되며, 공인전자주소에 영리 또는 홍보를 목적으로 광고를 송신할 수도 없다.⁹⁵⁾

93) https://www.npost.kr/pages/domain/intro_01_2.jsp(2016년 7월 23일 방문)

94)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18조의5

95)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18조의6 및 제18조의7. 이를 위반하는 경우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동법 제46조 제1항).

3) 내용증명서비스의 전자적 처리와의 비교

공인전자주소 내지 샵메일은 해당문서가 전자적으로 작성되어 발송되고, 수신자 역시 전자적으로 수신하는 등 유통의 전 과정이 전자문서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일부 과정에서만 전자적으로 처리되는 내용증명업무의 전자화와는 구분된다. 즉, 내용문서를 실질문서로 접수하여 배달하는 일반 내용증명은 물론 전자내용증명과의 구별된다. 샵메일은 해당 문서가 전자문서로 작성·접수·처리됨에 반하여, 내용증명업무의 전자화는 실물로 작성·접수된 내용문서를 전자화문서로 변환하여 처리하므로, 양자간에 업무의 프로세스나 법적 지위도 달리 하게 된다. 샵메일과 내용증명업무의 전자화는 증명 및 발송(송·수신), 재증명을 위한 제반처리과정이 전자적으로 처리된다는 점에서 유사점을 찾을 수도 있지만, 최초 생성정보의 작성형식이 다르기 때문에 처리대상이 각각 전자문서와 전자화문서로 차이를 보인다. 그리고 샵메일은 유통증명서를 통해 전자문서의 송·수신일시와 송·수신자 등에 대한 법정 추정효가 인정되지만, 내용증명은 그러한 명문의 규정은 없다. 다만, 공행정기관인 우체국에 의해서 증명된 발송사실은 진실한 증거로 추정될 것이므로,⁹⁶⁾ 현실적 차이는 크지 않을 것이다.

<표 6> 내용증명업무 전자화와 샵(#)메일

	작성	처리	증명	발송 (송·수신)	재증명	열람
내용증명 업무 전자화	종이 문서	전자화 문서	(출력된) 종이문서	(출력된) 종이문서	(출력된) 종이문서	전자 문서
샵(#)메일	전자 문서	전자 문서	전자 문서	전자 문서	전자 문서	전자 문서

96) 대법원 1980.1.15. 선고 79다1498 판결, 1997.2.25. 선고 96다38322 판결.

공인전자주소(샵메일)송수신 사실을 증명함으로써 일정부분 내용증명 또는 전자내용증명을 대체할 가능성이 있지만, 전적으로 대체하는 것은 일정한 한계가 있다. 첫째, 법률행위에 있어서 형식요건으로 내용증명을 요구하는 법령들이 다수 존재한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과 「국민건강보험법」, 「의료급여법」,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등이 일정한 법률행위 내지 의사표시에 내용증명에 의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둘째, 아직까지 많은 수의 사람들이 서면에 의한 통지를 선호하고 있다. 2014년 기준 공인전자주소 유통현황은 67만건에 그치고 있지만, 전자우편 방식의 내용증명은 연간 157만통 이상이고, 우체국창구에서 실물문서를 접수하여 발송하는 내용증명을 합치면 700만통을 넘는다.⁹⁷⁾ 셋째,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기 위해서는 수취인의 성명과 주소를 적시함으로써 충분하지만, 샵(#)메일의 수신자는 공인전자주소를 등록한 자로 제한된다. 즉, 샵(#)메일을 송신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공인전자주소 등록여부와 해당 공인전자주소를 확인하여야 하고, 미등록 상태라면 샵(#)메일 송신을 위해서 공인전자주소의 등록을 요청하여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 하지만 내용증명이 일정한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의사표시·의사통지의 증거로 삼거나 심리적 압박수단으로 사용되는 것이 상당수라고 점을 고려하면 기대하기 어려운 가정이라고 할 것이다.

<표 7> 공인전자주소 등록 및 유통현황(단위 : 건)⁹⁸⁾

구 분	2012년	2013년	2014년	누 계
등 록	7,910	17,561	139,130	164,601
유 통	14,784	123,036	670,310	808,130

97) 30쪽의 <표 1> 참조.

98) 김현철, “공인전자주소 제도의 현황과 법적쟁점”, 『정보통신방송정책』 제27권 12호,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15, 30쪽.

(3) 전자내용증명 및 샵(#)메일은 “내용증명서비스 전자화”를 대신할 수 있는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전자내용증명은 편의성과 신속성, 비용, 인지도 등으로 인하여, 그리고 샵메일(공인전자주소)는 법령상의 한계와 수신인의 제약으로 인하여 일반내용증명을 대체하는데 한계가 있다. 일반내용증명의 고유한 기능과 가치가 있고, 앞으로도 많은 국민들은 실물 서면(종이문서)에 의한 내용증명을 폭넓게 이용하리라는 것을 예상할 수 있다. 반면에 내용증명업무의 효율화와 비용절감, 이용자의 편의성 및 만족도 등을 고려한다면,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내용증명의 업무처리를 고도화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성도 인정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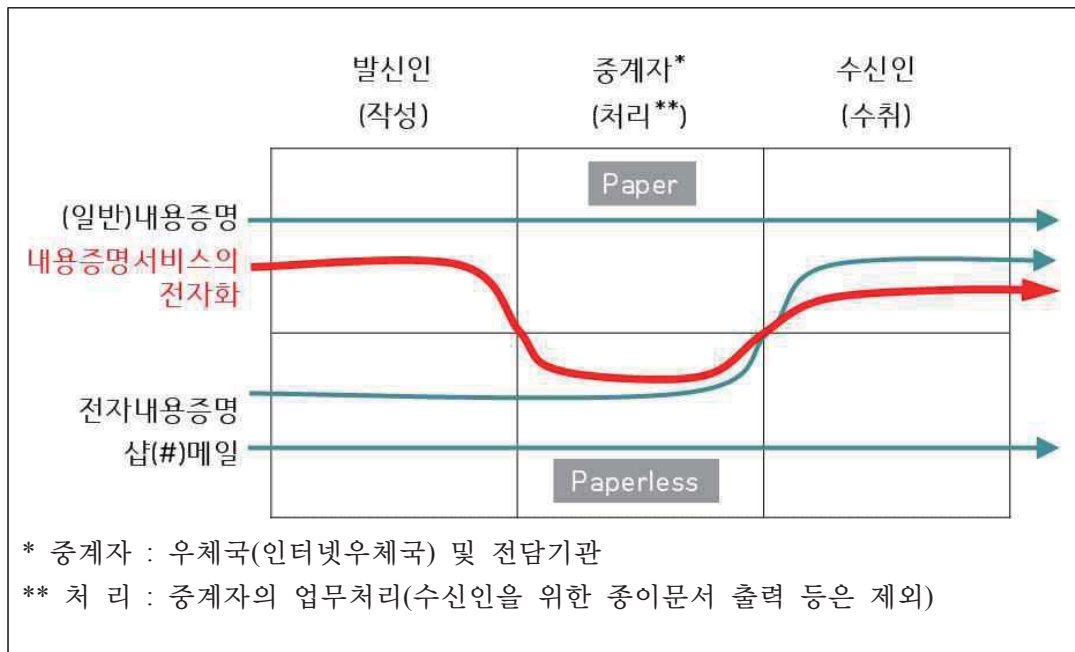
<표 8> (일반)내용증명과 내용증명업무 전자화, 전자내용증명, 샵(#)메일

	작성	처리	증명	발송 (송·수신)	재증명	열람
일반 내용증명	종이 문서	종이 문서	종이 문서	종이 문서	종이 문서	종이 문서
내용증명 업무 전자화	종이 문서	전자화 문서	(출력된) 종이문서	(출력된) 종이문서	(출력된) 종이문서	전자 문서
전자 내용증명	전자 문서	전자 문서	(출력된) 종이문서	(출력된) 종이문서	(출력된) 종이문서	전자 문서
샵(#)메일	전자 문서	전자 문서	전자 문서	전자 문서	전자 문서	전자 문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경계가 점차 약해지고 금융·교육·의료·여가·노동 등 많은 영역에서 온라인의 비중이 커지고 있지만, 오프라인을 전적을 대체할 수는 없으며 여전히 오프라인을 통한 생활기반은 존재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내용증명서비스의 전자화는 <그림 15>과 같이 일반내용증명과 전자내용증명의 보완재로서 빈틈을 메꾸는 유용한 제도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즉, 전통적인 방식의 (일반)내용증명서비스는 발송인이 종이서면으로 작성한 것을 중계자(우체국)이 종이서면의 형태를 유지하여 수취인에게 송부하는 형태이지만, 내용증명서비스의 전자화는 중계자(우체국)이 전자화문서로 변환하여 처리한다는 점에서 고유한 차별점이 있다.⁹⁹⁾ 이는 (일반)내용증명서비스를 보완하는 제도로서 ① 전자적으로 작성되어 접수된 통신문을 출력·봉합하여 종이서면으로 수취인에게 배달하는 전자내용증명 또는 ② 전자적으로 작성·송신·수신되는 샵(#)메일과 달리 새로운 보완재로 기능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림 14> 참여자별 역할영역 비교



99) 다만, 발송인과 수취인은 종이서면을 다룬다는 점은 일반내용증명서비스와 동일하다.

3. 내용증명서면의 전자화의 요건과 효과

(1) 내용증명의 유형성(有形性) 요건

우편물은 통상우편물과 소포우편물을 말하는데, 통상우편물은 서신(書信) 등 의사전달물, 통화(송금통지서 포함) 및 소형포장우편물을 말하고, 소포우편물은 통상우편물 외의 물건을 포장한 우편물을 말한다(「우편법」 제1조의2 제1호). 이때 서신이란 “의사전달을 위하여 특정인이나 특정 주소로 송부하는 것으로서 문자·기호·부호 또는 그림 등으로 표시한 유형(有形)의 문서 또는 전단”을 뜻한다(「우편법」 제1조의2 제7호).

그런데,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이 내용증명은 선택적 우편역무의 종류를 규정하고 있는 「우편법 시행규칙」 제25조 제1항과 증명취급에 관한 제46조부터 제59조까지를 근거로 한다. 이에 따르면 내용증명은 ① 우체국(역무주체)이 ② 문서발송 사실을 ③ 증명하는 특수취급제도로서, 그 증명대상은 ④ 발송 사실과 ⑤ 발송 시점, ⑥ 문서의 내용이며, ⑦ 등기취급을 전제로 ⑧ 우체국창구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발송한다.

따라서 내용증명은 ‘선택적 우편역무’의 일종으로서, 통상우편물, 그 중에서도 문서만을 대상으로 한다. 문서(文書)를 객체로 하므로, 통화 또는 포장우편물 등은 그 취급대상이 아니라고 할 것이고, 그 대상이 되는 서신(書信)은 有形物일 것이 요구된다. 한편, 「우편법 시행규칙」 제25조 제1항 제12호가 전자우편물을 규정하고 있으나, 전자적 형태로 접수된 통신문 등을 출력·봉합하여 수취인에게 배달하는 역무이므로, 송부되는 대상물은 유형의 문서로 제한된다.

다만, 法文은 書信을 통상우편물의 일종인 의사전달물의 예시로서 기술하고 있으므로, 우편물에 해당하는 서신 이외의 “(유형의 문서가

아닌) 전자화된 의사전달물”이 성립할 수 있다는 해석도 가능하다. 그러나 전자화된 전달수단이 物件으로서 법적지위를 가지는지 여부와 「우편법」에서 정하고 있는 의사전달물(物)에 해당하는지는 명확하지 아니하다.

(2) 내용증명 대상문서의 전자적 보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전자화문서의 보관으로 법정 문서보관에 갈음할 수 있다는 점을 앞서 확인했다. 즉, 전자화문서가 ① 전자화대상문서와 그 내용 및 형태가 동일하고, ② 그 내용을 열람할 수 있고, ③ 작성·송신·수신된 때의 형태 또는 그와 같이 재현될 수 있는 형태로 보존되어 있고, ④ 작성자·수신자 및 송신·수신일시에 관한 사항이 보존되어 있다면, 이로써 종이문서 보관을 대신할 수 있다.¹⁰⁰⁾

전자화문서로서 종이문서의 보관에 갈음하는 방법은 공인전자문서센터를 통해 보관하는 방법과 직접 법정 요건을 갖추어 보관하는 방법으로 나뉠 수 있다. 전자는 법정요건을 갖춘 보관이 행하여진 것으로 간주되고,¹⁰¹⁾ 후자에 관해서는 미래창조과학부가 「전자화문서의 작성 절차 및 방법에 관한 규정」을 통해 전자화대상문서와 전자화문서의 내용·형태의 동일성 요건과 전자화문서의 작성 방법·절차 등에 관하여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공인전자문서센터를 통해 보관하거나, 「전자화문서의 작성 절차 및 방법에 관한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내용문서(내용증명 대상문서)를 전자적으로 변환하면, 「우편법 시행규칙」 제48조 제3항의 등본보관(3년)에 갈음할 수 있다.

그러나 양자 모두 내용증명업무에 적용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점이 있다. 먼저 공인전자문서센터를 통해 보관하는 방안은 내용증명을 다루는 전국 각지의 우체국과 공인전자센터의 물리적 거리로 인한 한

100)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5조 제2항

101)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31조의5

계가 있다. ① 전국의 우체국에서 공인전자문서센터로 내용문서를 보내서 전자화문서로 변환하거나, ② 공인전자문서센터가 필요 시설·장비를 구비하여 각 우체국에서 전자화문서로 변환하거나, ③ 각 우체국에 일부 시설·장비를 구비하고 공인전자문서센터로 전송하는 방안 등을 상정할 수 있지만, 모두 현실적이라고 보기는 어렵다.¹⁰²⁾ 다음으로 우체국이 전자화문서를 작성하여 보관하기 위하여 직접 법정 요건을 구비하는 것은 그 요건 충족이 용이하지 않다. 「전자화문서의 작성 절차 및 방법에 관한 규정」의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전자화 작업장은 통제구역으로 구획하고, 출입통제장치(출입카드 또는 신원확인)를 위한 생체인식방식 등)를 설치하여야 한다.¹⁰³⁾ 뿐만 아니라 폐쇄 회로TV(CCTV)와 보안캐비닛을 설치하고, 내부전용망을 통한 네트워크를 구성하여야 하며, 기술자료를 임치하여야 한다.¹⁰⁴⁾ 전자화문서에 관한 이러한 요건은 전자화문서 작성과정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인데, 내용증명은 국가가 독점하는 우편서비스의 일종인데 공행정 기관인 우체국이 이를 수행함에 있어서 민간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 의문이다. 우체국의 내용문서를 전자화문서로 변환하여 보관함에 있어서 업무특성을 반영한 작성 절차 및 방법에 관한 특칙이 요구되는 이유이다.

(3) 내용문서의 전자적 발송

하지만, 전자적으로 변환된 문서로서 원본문서의 송신·수신에 같음할 수는 없다.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은 전자문서의 문서성

102) 첫 번째 방안은 전자화문서로 보관하는 일반적인 방식이겠으나, 이는 내용증명 업무의 신속성을 심대하게 저해할 우려가 있다.

103) 「전자화문서의 작성 절차 및 방법에 관한 규정」 제5조 제1항 및 「전자화문서의 작성 시설 및 장비 인증기준 세부사항」 제4조 제2항

104) 「전자화문서의 작성 절차 및 방법에 관한 규정」 제4조 및 제5조, 제22조, 제27조 참조.

을 법정하고 있으며(제4조제1항), 이는 모든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에 적용되므로(제3조), 전자문서 형태의 書信이 성립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우편법」은 書信의 요건으로 有形을 정하고 있기 때문에 전자적 형태의 서신은 성립할 수 없다.¹⁰⁵⁾ 따라서 ① 서신의 범위를 무형물로 확대하거나 ② 전자문서·전자화문서를 의사전달물에 포섭하는 등의 법률상의 조치가 요구된다.

또한, 내용증명은 많은 경우에 의사표시 또는 의사통지에 대한 증거가 되고, 그러한 의사표시·의사통지는 일정한 법률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유형의 문서로 수취인에게 배달되어야 할 것이지, 일방적으로 전자문서 또는 전자화문서의 송신으로 갈음하여서는 아니 될 것이다. 즉, 법률의 근거없이 有形의 書信이 아닌 전자문서의 송신으로써 의사표시·의사통지 등이 상대방에게 통지된 것으로 간주하거나 추정하는 효력을 부여하는 것은 법률상의 이해관계자인 상대방의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 또는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내용증명서신의 발송에 갈음하여 전자문서로 발송¹⁰⁶⁾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법률상 근거가 요구된다.

그리고 법률의 근거를 마련하는 경우에도 수취인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합리적 요건이 구비되어야 할 것이다. 즉, 전자화된 내용증명을 송신하여, 수신자가 관리하는 정보시스템에 입력된 때에 내용증명의 발송이 있는 것으로 보기 위해서는 등기취급에 갈음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상의 근거 필요하다.

105) 판례는 “‘서면’이란 일정한 내용을 적은 문서를 의미하고 이메일 등 전자문서와는 구별되지만 …… 단지 이메일 등 전자문서에 의한 통지라는 이유만으로 서면에 의한 통지가 아니라고 볼 것은 아”니라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2015.9.10, 선고, 2015두41401, 판결). 다만, 동 판례는 “서면 통지하도록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 27조의 입법취지를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구체적 사안에 따라 서면에 의한 해고통지로서 유효하다고 보아야 할 경우가 있다”고 함으로써 다른 법률의 명시적 규정뿐만 아니라 입법취지에 따라 전자문서의 효력을 제한하고 있다.

106) 내용증명을 전자문서로 수취인에게 전달하는 것은 법률상 송신(送信)에 해당한다.

4. 내용증명서비스의 전자적 처리를 위한 법제화 방안

현행 법제에서는 내용문서를 전자화하여 처리하기 위해서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과 「전자화문서의 작성 절차 및 방법에 관한 규정」의 요건에 따라야 하지만, 우체국업무의 특성에 비추어볼 때 적합성이 부족하다는 점에서 관련 법제의 개선을 통해 합리적 대안을 모색해보기로 한다.

(1) 전자문서법제의 개선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5조 제3항은 “전자화대상문서와 전자화문서의 내용 및 형태의 동일성에 관한 요건, 전자화문서의 작성 방법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미래창조과학부고시로 정하고 있고, 이에 따른 고시가 「전자화문서의 작성 절차 및 방법에 관한 규정」이다. 전자문서법제의 틀 속에서 내용증명서비스의 전자화를 위한 효율적 기반을 마련하는 안으로는 다음과 같은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첫째,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에 우체국의 전자화문서 작성에 관한 특칙을 두거나 특칙을 위한 위임입법의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이다. 그러나 전자문서에 관한 기본법 역할을 하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에 우편업무와 관련된 특칙을 두는 것은 법률의 체계정합성을 부합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고 입법체계를 혼란시킨다고 할 수 있다. 더욱이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은 전자화문서 작성에 관한 절차와 방법 등을 고시에 위임하고 있다는 점에서 개정 수요도 강하지 않다고 할 것이다.

둘째,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5조 제3항에 따라 (가칭)「우체국의 전자화문서 작성에 관한 규정」과 같은 내용문서의 전자화업무에 관하여 적용되는 우체국업무의 특성이 반영된 별도의 고시를 두는 방안이다. 이 경우 「전자화문서의 작성 절차 및 방법에 관한 규정」과 유사한 형태를 고려할 수도 있으며, 별도 고시에는 특별한 규정이 필요한 부분에 한해서 별도 규정을 마련하고 그 밖에 절차·방법에 대해서는 「전자화문서의 작성 절차 및 방법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는 형태를 고려할 수도 있다. 이 경우 별도의 고시는 두 가지를 고려할 수 있다. 그 하나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5조 제3항에 따라 직접 별도의 고시를 정하는 방안이다. 우편을 비롯한 우정사업은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경영의 자율성이 보장되지만,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은 미래창조과학부를 소관부처로 하고 우편사업을 관장하는 우정사업본부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소속으로 두게 되어 있으므로, 우체국에 관한 별도의 고시를 미래창조과학부고시로 마련하는 것도 현재의 정부조직 체계 내에서는 내용증명업무의 체계적·능률적 수행을 저해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른 한 가지는 우체국에 적용된 고시를 우정사업본부장이 정하도록 하는 방안이다. 현재 전자화문서 작성에 관한 사항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5조 제3항), 동법의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권한은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동법 제39조). “우체국의 전자화문서의 작성 절차 및 방법”에 관한 고시에 관한 권한을 미래창조과학부 소속기관의 장인 우정사업본부장에게 위임함으로써 우정사업본고시로 우체국의 전자화문서 작성에 관한 사항을 정하도록 하는 방안이다.¹⁰⁷⁾

107)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령」의 개정이 필요하다

셋째, 전자화문서 작성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일반규정을 두고 있는 「전자화문서의 작성 절차 및 방법에 관한 규정」의 개정을 통해 우체국에 적용되는 요건·방법·절차 등에 관해 완화된 특칙을 마련하는 방안이다. 이 경우 「전자화문서의 작성 절차 및 방법에 관한 규정」의 현행 조문의 적용을 전제로 하고 특별한 규정이 필요한 부분에 한해서 별도 규정을 신설하는 형태가 될 것이다.

넷째, 「전자화문서의 작성 절차 및 방법에 관한 규정」의 개정을 통해 우체국에 관한 별도 규정을 둘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이다. 이 경우 “제53조의2(우체국에 관한 특례) 우체국의 전자화문서의 작성방법·절차에 관해서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달리 정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와 같은 조문형태를 고려할 수 있으며, 이를 근거로 우정사업본부훈령을 통해 우체국의 전자화문서 작성에 관한 규범을 마련할 수 있다.

이렇듯 전자문서법제를 개선하여 내용증명서비스의 전자화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더라도, 실물 서면(종이문서)을 기준으로 내용증명 처리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우편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전자화문서에 의한 내용증명 처리절차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

(2) 우편법제의 개선

전자문서에 관한 기본법 역할을 하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또는 그 하위법령에 우편업무와 관련된 특칙을 두는 것은 법률의 체계정합성을 부합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고 입법체계를 혼란시키는 측면이 있으므로, 궁극적으로는 「우편법」 개정을 통해 내용증명의 전자적 처리의 근거와 위임입법의 근거를 마련하고, 하위법규(동법 시행령·시행규칙 또는 고시)에서 구체적인 요건과 절차를 규정할 필요가 있다.

첫째, 내용증명을 비롯한 우편업무 관련 서면의 전자화에 관한 법적 근거를 「우편법」에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 내용증명역무는 「우편법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선택적 우편역무의 일종에 불과하다. 이러한 내용증명 관련업무의 일부를 전자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우편법」을 개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본말이 전도되었다는 비판이 있을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입법수요는 내용증명서비스에 국한하지 않으며, 우편역무의 제공과 서신송달업자의 관리 등에 있어서 널리 적용될 여지가 있다. 전자화문서의 법적 지위와 효력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법률에 명문의 규정을 둘 필요가 있으며, 이 경우 앞서 살펴본 전자화문서에 관한 유사입법례와 함께 특허문서 및 상표문서, 디자인 문서 등의 전자화업무에 관한 입법례도 참조가 될 수 있을 것이다.¹⁰⁸⁾ 「우편법」에 담을 내용으로는 ① 전자화문서에 대한 용어정의와 ② 우편문서 전자화업무의 개념, ③ 우편문서의 전자화의 근거, ④ 우편문서 전자화업무의 원칙 및 절차, ⑤ 전자화문서의 법적 효력, ⑥ 전자화문서의 취급절차, ⑦ 우편문서 전자화업무에 관한 위임입법규정 등을 고려할 수 있다.

둘째, 현재 「우편법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증명을 비롯한 특수취급에 관한 규정을 「우편법」으로 상향입법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내용증명을 비롯한 각종 특수취급의 근거와 개념, 내용 등을 법률에서 상세히 정하고 있는 일본의 입법사례(「郵便法」)를 참조할만하다. 이 경우 「우편법」에 담을 내용으로는 「우편법 시행규칙」 제12조 및 제25조 등에서 산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① 특수취급의 종류와 ② 내용증명 등 개별 특수취급의 개념과 요건, 법적 효력, ③

108) 특허청장은 전자문서로 제출되지 아니한 특허출원서류·상표등록출원서·디자인등록출원서 등을 전자화하여 파일에 수록할 수 있는데, 이렇게 수록된 내용은 해당 서류에 적힌 내용과 같은 것으로 간주된다(「특허법」 제217조의2, 「상표법」 제92조 및 「디자인보호법」 제208조).

특수취급 업무 처리에 관한 구체적 규정을 위한 위임입법의 근거 등을 고려할 수 있다.

셋째, 우편문서 전자화의 구체적인 요건과 절차 등은 상당히 구체적이고 기술적인 내용이 반영될 수밖에 없으므로, 하위법규(동법 시행령·시행규칙 또는 고시)에서 정할 수 있는 위임입법의 근거를 「우편법」에 둘 필요가 있다. 이를 근거로 우편문서 전자화 등의 개념과 적용범위, 우편문서의 전자화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요건, 우편문서의 전자화 업무의 절차 및 방법, 위·변조의 방지를 위한 기술적 대책 등을 상세히 정하는 규정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제 5 장 결 론

본 연구는 연간 수백만 통이 배달되는 내용증명 접수의 대다수가 우체국창구우체국창구에 집중되면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해소하고, 전자화된 형태로 생성·유통되는 문서의 비중이 커지고 있는 시대적 상황변화에 부응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정비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였다. 이를 보완하는 장치로서 전자내용증명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고, 유사서비스로서 샵(#)메일(공인전자주소) 제도가 있지만, 여러 가지 제약요건으로 인하여 우체국창구 접수를 전면 대체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내용증명 관련 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하고자 함에 있어서 우체국의 특성을 고려한 입법적 대안을 모색했다. 이 장에서는 앞선 분석을 통하여 도출된 시사점과 내용증명 관련 법제의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으로 결론에 갈음하기로 한다.

제2장에서는 우편역무의 개념과 특성, 유형, 법적 성격 그리고 해외 입법례 등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내용증명의 접수 및 처리 과정, 내용 문서의 증명 및 재증명의 요건과 법적 효과, 내용증명의 이용현황 등을 살펴보고, 내용증명이 법률요건으로 기능하는 각종 입법례를 조사·분석하였다. 이는 제4장에서 제안하는 제도 발전방안의 수요와 적용가능성을 판단하고, 구체적 법제개선안의 요건과 한계를 도출함에 있어서 주요자료로 활용되었다.

다음으로 제3장에서는 내용증명서비스의 전자화에 필요한 법령개정안의 구체적 타당성과 체계정합성 확보를 위하여 내용문서의 전자화와 연관성이 높은 법률체계를 조사·분석하였다. 즉, 내용증명서비스의 전자화를 위한 법제개선방안을 구상함에 있어서 고려 내지 참조할 필요가 있는 서면의 전자화동향과 공공·민간분야의 서면의 전자적 처리에 관한 현행 입법체계를 파악하고, 핵심적 개념이 되는 전자문

서와 전자화문서의 일반효와 보관효, 문서행위로서의 효력 등에 관한 입법례를 비교·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제4장에서는 내용증명서비스 전자화의 타당성과 그 요건 및 효과 등을 검증하고, 내용증명 이용자의 편익을 증대함과 동시에 국민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균형적 제도 발전방안의 도출을 시도하였다. 그 전제로서 내용증명서비스 전자화의 내용과 기대효과를 분석하였다. 내용증명서비스의 전자적 처리를 통해 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고객만족도를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은 다양한 형태를 구상할 수 있지만, 단기적으로는 우체국 창구를 통하여 접수되는 내용증명의 전자화를 목표로 한다. 우정사업본부는 이를 통해서 비용감소와 고객만족도 제고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전국단위로 재증명 및 열람이 가능토록 함으로써 내용증명서비스를 이용하는 국민의 편익을 증진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다음으로 내용증명서비스 전자화와 비슷한 기능을 하는 유사제도를 비교·분석하였다. 비교·분석의 대상은 전자내용증명(e내용증명 또는 e-그린우편)과 샵(#)메일(공인전자주소)로서, 각각의 개념과 요건, 효과 등을 살펴보고, 이들이 내용증명서비스 전자화를 대신할 수 있는지 분석함으로써, 내용증명서비스의 전자화가 일반내용증명과 전자내용증명의 보완재로서 빈틈을 메꾸는 유용한 제도가 될 수 있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이어서 내용증명의 유형성 요건과 현행 전자화문서 작성에 관한 현행 규정의 문제점, 내용증명업무의 전자적 처리의 한계 등을 분석하고, 내용증명서비스의 전자적 처리를 위한 전자문서법제 및 우편법제의 개선방안을 제안했다.

먼저 전자문서법제의 큰 틀에서 내용증명서비스의 전자적 처리를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방안으로서 ①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에 우체국의 전자화문서 작성에 관한 특칙을 두거나 특칙을 위한 위임입법의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과 ② 동법에 근거하는 우체국업

무의 특성이 반영된 별도의 고시를 두는 방안, ③ 전자화문서 작성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일반규정을 두고 있는 「전자화문서의 작성 절차 및 방법에 관한 규정」의 개정을 통해 우체국에 적용되는 요건·방법·절차 등에 관해 완화된 특칙을 마련하는 방안, ④ 「전자화문서의 작성 절차 및 방법에 관한 규정」의 개정을 통해 우체국에 관한 별도 규정을 둘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 등을 모색해 보았다.

그러나 전자문서법제를 개선하여 내용증명서비스의 전자화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더라도, 실물 서면(종이문서)을 기준으로 내용증명 처리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우편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전자화문서에 의한 내용증명 처리절차를 보완할 필요가 있을 뿐만 아니라, 전자문서에 관한 기본법 역할을 하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또는 그 하위법령에 우편업무와 관련된 특칙을 두는 것은 법률의 체계 정합성을 부합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고 입법체계를 혼란시키는 측면이 있으므로, 궁극적으로는 「우편법」 개정을 통해 내용증명의 전자적 처리의 근거와 위임입법의 근거를 마련하고, 하위법규(동법 시행령·시행규칙 또는 고시)에서 구체적인 요건과 절차를 규정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는 첫째, 내용증명을 비롯한 우편업무 관련 서면의 전자화에 관한 법적 근거를 「우편법」에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 둘째, 현재 「우편법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증명을 비롯한 특수취급에 관한 규정을 「우편법」으로 상향입법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셋째, 「우편법」의 위임에 따라 그 하위법규(동법 시행령·시행규칙 또는 고시)에서 우편문서 전자화의 구체적인 요건과 절차 등은 구체적이고 기술적인 내용을 규율하여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입법방안은 정책자료로서 실용적 활용가치를 고려한 것으로서, 선택적 우편업무의 일종인 내용증명에 관한 법리적·정책적 분석을 통하여 관련 법제의 발전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우정사업과 관련한 제도 발전에 기여할 것을 기대해본다.

참고문헌

- 구 슬, “독일의 전자공증제도”, 「최신외국법제정보」 2013년 제6호, 한국법제연구원, 2013. 8.
- 김도년, “미국의 전자공증제도”, 「최신외국법제정보」 2014년 제1호, 한국법제연구원, 2014. 3.
- 김제완 외, 「새로운 형태의 전자적 의사표시와 전자문서에 관한 연구」, 법무부, 2011.
- 김현철, “공인전자주소 제도의 현황과 법적쟁점”, 「정보통신방송정책」 제27권 12호,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15.
- _____, “행정기관과 공공기관 문서의 전자화에 관한 공법적 검토”, 「공법학연구」 제14권 제4호, 한국비교공법학회, 2013.
- 문성철, “해외 주요국의 일반통상우편우편 부가서비스 제공 현황”, 「우정정보」, 우정경영연구소, 2009.
- 법제처·한국법제연구원, 「법령용어사례집(상)」, 2003.
- 신도철, “체신공사의 우편사업 독점범위에 대한 정책적 연구”, 「우정정보」, 통신개발연구원, 1995.
- 신영수, “우편산업의 시장화를 위한 규범적 전제와 과제”, 「법제연구」 제32호, 한국법제연구원, 2007.
- 이정현, “일본의 전자공증제도”, 「최신외국법제정보」 2013년 제7호, 한국법제연구원, 2013. 10.
- 이준호,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상 전자문서의 형식요건에 관한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13.
- 전병서, 「각국의 공증법제 비교 연구」, 법무부, 2008.

참 고 문 헌

정하중, 「행정법개론(제9판)」, 법문사, 2015.

최중범, “보편적 우편서비스에 관한 소고”, 「우정정보」,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06.

_____, “우편사업자의 보편적 서비스 제공 의무”, 「우정정보」,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01.

한국인터넷진흥원, 「공인전자주소(샵메일) 설명 및 주요질문」, 2016.

현암사, 「법률용어사전」, 2001.

대법원 1980.1.15. 선고 79다1498 판결.

대법원 1997.2.25. 선고 96다38322 판결.

대법원 2008.12.24. 선고 2008두17806 판결.

대법원 2009.7.23. 선고 2006다81325 판결.

대법원 2015.9.10. 선고 2015두41401 판결.

<http://eur-lex.europa.eu/legal-content/EN/TXT/HTML/?uri=CELEX:31997L0067&from=EN>

https://e-naiyo.post.japanpost.jp/enaiyo_kaiin/enaiyo/enkn110/engm111.xhtml#

<http://service.epost.go.kr/comm.RetrievePostagSrvcMain.postal>

<http://service.epost.go.kr/postal/front/econprf/pafay01b02.jsp>

<http://w-jimusho.com/nai5.html>

<http://www.epostopia.com/postemail/WhatEmail.hms>

<http://www.koreapost.go.kr/newBoard/view.action?command=view&idx=7983128&boardId=911&contId=030701000000&searchType=&searchText=&page=2>

<http://www.mutou-hiratsuka.com/sdshm.html>

https://www.npost.kr/pages/domain/intro_01_1.jsp

https://www.npost.kr/pages/domain/intro_01_2.jsp

[붙임] 전자문서로 할 수 있는 사인(私人)의 문서행위

1.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검사기록의 보존
2. 「골재채취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장부의 비치
3.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5조제3항에 따른 거래계약서의 작성 및 그 사본의 보존
4. 「관광진흥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여행계약서의 교부
5.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거래 정보등의 주요 내용, 사용 목적, 제공받은 자 및 제공일 등의 통보
6.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거래정보등의 요구자에 의한 금융회사등에 대한 통보의 유예요청
7. 「도시가스사업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서류의 작성 및 보존
8. 「도시가스사업법」 제26조제4항에 따른 안전관리 실시기록의 작성 및 보존
9. 「도시가스사업법」 제30조의7제2항에 따른 도면의 작성 및 보존
10.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에 따른 장부의 비치 및 기록
1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에 따른 장부의 작성 및 비치
1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에 따른 기록
13.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제4항에 따른 장부의 보존
14.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기록의 작성·비치 및 보존
15.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2조제2항에 따른 기록의 작성·비치 및 보존
16.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2조제3항에 따른 기록의 보존
17.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제2항에 따른 장부의 보고

18.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제3항에 따른 장부의 작성
19.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제4항에 따른 장부의 보존
20.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제2항에 따른 기록의 작성 및 보존
21. 「먹는물관리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기록의 보존
22.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5조제4항에 따른 주식교환계약서의 비치
23. 「부동산투자회사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투자보고서의 작성
24. 「부동산투자회사법」 제38조에 따른 재무제표와 투자보고서의 비치 및 공시
25. 「사립학교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장부 또는 서류의 작성 및 비치
26. 「산업표준화법」 제38조제4항에 따른 문서의 작성 및 비치
27.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5조제6항에 따른 검사기록의 작성 및 보관
28. 「선원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징계사실의 통보
29. 「선원법」 제58조에 따른 임금대장의 비치
30. 「선원법」 제153조에 따른 서류의 보존
31.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8조제3항에 따른 기록의 보존
32.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12조제5항에 따른 기록의 작성 및 보존
33. 「약사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목록의 제출
34. 「약사법」 제25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른 목록의 통보
35. 「약사법」 제27조제4항에 따른 통보
36. 「약사법」 제29조에 따른 처방전의 보존
37. 「약사법」 제85조제4항에 따른 거래 현황의 작성 및 보존
38.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서류의 제출

39.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정정보도 청구
40.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7항 및 제8항에 따른 원본, 사본 등의 보관
41.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른 반론보도의 청구
42.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제1항 단서에 따른 동의(「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이 있는 전자문서에 의한 경우로 한정한다)
43. 「여신전문금융업법」 제53조의2제3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
44. 「여신전문금융업법」 제53조의2제4항에 따른 정보 및 자료의 제출
45. 「염업조합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결산보고서(사업보고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잉여금처분안 또는 손실금처리안 등을 말한다)의 제출 및 비치
46. 「하수도법」 제68조제2항에 따른 장부의 비치·기록 및 보존
47.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8조제4항에 따른 자료의 보존
48. 「전기공사업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전기공사 도급대장의 비치
49. 「전기사업법」 제16조제4항에 따른 기본공급약관의 비치
50. 「전기사업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측정결과의 기록 및 보존
51. 「전기사업법」 제66조제4항에 따른 기록 및 보존
52.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9조에 따른 서류의 비치
53. 「폐기물관리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장부의 비치·기록 및 보존
54. 「하천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기록 및 보관
55. 「하천법」 제52조제3항에 따른 통보
56. 「해운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운항관리규정의 제출
57.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기록 및 관리
58. 「환경영향평가법」 제11조제2항, 제24조제1항·제2항 및 제44조제1항에 따른 서류의 작성

[붙임]

59. 「환경영향평가법」 제12조제1항 단서 및 제25조제1항에 따른 평가서 초안의 작성
60. 「환경영향평가법」 제5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보존
61.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서면 통지